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6-1차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2016. 3.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 주요 국가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파악을 위하여 독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6개국 연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취합하였음.

○ 본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관 개인의 의견 또는 견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힘.

목 차

□ 국가별 제도개요 ····· 1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1. 독일 ····· 7

2. 미국 ····· 32

3. 영국 ····· 48

4. 일본 ····· 64

5. 프랑스 ····· 77

6. 호주 ····· 88

국가별 제도개요

1.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상설기구임.
-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연방통계청장이 역임함.
-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명권자는 연방대통령
- ❍ 독일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역 내의 인구변동, 주 경계 변경 등 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변경의 필요성을 조사·보고하는 부수적·보조적 기구이며, 선거구 분할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제안에 국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님.
- ❍ 독일에서 선거구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연방법률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연방하원의원에게 독일의 선거구 획정권한이 있음.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 ❍ 독일의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 결정방식은 「연방선거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 독일의 비례대표제는 각 주 단위로 작성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이며, 지역구 선거와 함께 해당 명부를 대상으로 정당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운영되고 있음.
- ❍ 독일의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분배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2.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미국은 연방의회 선거구와 주 의회 선거구가 존재하며, 양 선거구 획정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고 연방 정부는 각 주에 인구통계 제공의 의무를 지님.
- 선거구 획정 주체로는 각 주에 따라 상이하며 주 의회, 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 대체위원회, 독립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음.
- 선거구 획정 주체의 구성원 수와 임명 절차는 각 주의 관련법 을 따르며 주 별로 상이함.
- 미국 선거구 획정 절차는 연방 인구조사국에서 10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기초로 의석배분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를 각 주에 송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정부는 선거구를 획정함.
-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 판례는 한국에 비해 인구대표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연방 선거와 주 선거에서에서 그 엄격함을 달리함.
- 미국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주 별로 주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선거구를 그 정당에 유리하게 획정하는 현상임.

3. 영국(United Kingdom)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독립성·비정치성·중립성을 지향하는 자문기관으로, 비정부 공공기관임.
- 「의회선거구법 1986」은 획정위의 안에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의 자격을 부여하며, 선거구 검토 과정은 획정위원회가 전담함.
- 각 지역 획정위원회는 법률로 명시된 선거구획정 원칙을 준수해야 함. 오는 2020년 총선은 선거구 조정 (650석→600석) 및 선거구 간 인구 편차에 관한 '5% 규정'이 적용됨.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 영국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FPTP)를 고수하고 있음.
- 유럽의회선거 및 일부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단기이양식, 폐쇄형 정당명부제 등 비례대표제가 활용됨.
- 2015년 총선은 역사상 가장 불(不)비례한 선거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됨.

4. 일본(Japan)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중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은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에 의거한 심의회가 전담하고 있음.
- 상기 심의회는 5년임기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음.
-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선거구 획정 절차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국세조사의 결과에 기반하여 개정안 권고, 법안 심사, 공직선거법 개정의 순으로 이루어짐.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 비례대표의 의석수는 동트식(D'Hondt Method)로 계산됨.
- 중의원 선거의 경우 구속명부식이며 중복입후보가 허용됨. 중복입후보자는 석패율에 의거해 당선자가 결정됨.
- 참의원 선거는 비구속명부식이며 정당표와 개인표를 합산한 득표수로 의석수가 결정되며, 당선자는 개인표에 의거함.

5. 프랑스(French Republic)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헌법38조」에 의거 정부는 법률명령으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음.
- 데파트망(道)에 최소 국회의원 1인 및 125 000명 인구 단위 증가에 따라 국회의석 추가 원칙 적용
- 재외국민선거구 신설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조정위원회 신설하여 발의 된 관련법안 심의.

2) 비례대표상원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 프랑스상원선거는 최고득표당선 2회제와 비례대표당선 1회제 투표 방식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 3인 이상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데파르트망(道, 지역선거구)의 경우, 외부입후보자와 우선순위투표가 배제한 채 최고평균득표 규정에 따르는 비례대표제도 실시함.
- 정당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인을 결정함.

6. 호주(Australia)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선거위원회는 선거구획정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해당 주・준주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논의의 투명성을 높이며 선거구획정절차에서의 입법부 역할은 없음.
- 선거구획정 주기와 인구편차 허용범위, 선거구획정 시 고려할 요소, 그리고 인구수기준(quota) 구하는 방법과 추정시간(projected time)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선거구획정주기는 7년임.
- 퀸즐랜드와 서호주의 외딴 지역과 타즈매니아 주에는 지형상 다른 지역과는 큰 인구편차가 존재하며, 헌법에서 각 주의 최소 하원의원 정수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투표가치의 등가성의 원칙은 적용할 수 없음.
- 남호주의 선거구획정기준에는 '선거의 공정성(Electoral Fairness)조항'을 추가하여 선거구간 투표가치의 편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 호주상원의원의 비례대표선거방식은 단기이양식 방법으로 모든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표시한 선호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들에게 이양되며, 후보자는 득표할당량(quota)이상을 획득한 경우 당선 결정함.

독 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가. 선거구획정 주체

1)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직무

❍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 연방통계청장
- 연방행정재판소 판사 1인
- 기타 5인

의 총 7명으로 구성(「연방선거법 제3조 제2항」)

❍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나, 통상적으로 연방 통계청장이 역임.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3조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 제2항 연방대통령은 상설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 통계청장, 연방 행정재판소 판사 1인, 그 밖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WahlG」 § 3 Wahlkreiskommission und Wahlkreiseinteilung (2) Der Bundespräsident ernennt eine ständige Wahlkreiskommission. Sie besteht aus dem Präsident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einem Richter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und fünf weiteren Mitgliedern.

2)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명권자는 연방대통령
- ❍ 별도의 임명 또는 인준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3)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및 직무

- ❍ 독일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상설기구(「연방선거법 제3조제2항」)
- ❍ 독일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의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님.
- ❍ 독일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역 내의 인구변동, 주 경계 변경 등 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변경의 필요성을 조사·보고하는 부수적·보조적 기구임(「연방선거법 제3조제3항」).
-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분할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제안에 국회가 구속되는 것은 아님(「연방선거법 제3조제3항 내지 제4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3조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

제3항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역내의 인구 수 변동을 조사하고, 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어떠한 변경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고함을 임무로 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 보고서에서 다른 이유에 의한 선거구 분할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선거구 분할을 제안할 때에는 제1항에서 언급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보고서는 독일 연방 하원의 임기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연방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 내무부장관은 그 보고서를 즉시 연방 하원에 제출하고 연방 관보에 공표한다. 연방 내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단의 규정이 준용된다.

「BWahlG」

§ 3 Wahlkreiskommission und Wahlkreiseinteilung

(3) Die Wahlkreiskommission hat die Aufgabe, über Änderungen der Bevölkerungszahlen im Wahlgebiet zu berichten und darzulegen, ob und welche Änderungen der Wahlkreiseinteilung sie im Hinblick darauf für erforderlich hält. Sie kann in ihrem Bericht auch aus anderen Gründen Änderungsvorschläge machen. Bei ihren Vorschlägen zur Wahlkreiseinteilung hat sie die in Absatz 1 genannten Grundsätze zu beachten; ergeben sich nach der Berechnung in Absatz 1 Nr. 2 mehrere mögliche Wahlkreiszuteilungen, erarbeitet sie hierzu Vorschläge. (4) Der Bericht der Wahlkreiskommission ist de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innerhalb von fünfzehn Monaten nach Beginn d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zu erstatten.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leitet ihn unverzüglich dem Deutschen Bundestag zu und veröffentlicht ihn im Bundesanzeiger. Auf Ersuchen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hat die Wahlkreiskommission einen ergänzenden Bericht zu erstatten; für diesen Fall gilt Satz 2 entsprechend.

나. 선거구획정 원칙

- ❍ 독일에서 선거구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
- ❍ 선거구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연방선거법」에 규정
- ❍ 독일 연방 법률의 입법권은 연방하원의원에게 있으며, 따라서 독일의 선거구 획정 주체는 연방하원의회임.

다. 선거구획정 절차(단계별 서술)

- ❍ 독일의 연방 하원의원은 4년을 임기로 선출
- ❍ 차기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는 당해 연방 하원 임기개시 후 4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실시
- ❍ 차기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보고서를 연방 하원 임기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보고(연방 내무부장관)하고 공표(연방 관보)함(「연방선거법 제3조제4항」).

- ❍ 연방 내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완된 보고서 제출
- ❍ 제출된 보고서를 기초로 연방 하원이 법률 개정의 형식으로 선거구 획정
- ❍ 연방 하원 임기개시 32개월 이후에 시행된 주 경계의 변경은 당해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연방선거법 제3조제5항제3문」).
- ❍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별도의 기한이 규정되지 않았으나 「연방선거법 제3조」의 해석상 연방 하원 임기개시 후 32개월 이전에 차기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업무가 마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3조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

제2항 연방대통령은 상설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 통계청장, 연방 행정재판소 판사 1인, 그 밖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항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역내의 인구 수 변동을 조사하고, 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어떠한 변경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고함을 임무로 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 보고서에서 다른 이유에 의한 선거구 분할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선거구 분할을 제안할 때에는 제1항에서 언급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보고서는 독일 연방 하원의 임기개시 후 15개월 이내에 연방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 내무부장관은 그 보고서를 즉시 연방 하원에 제출하고 연방 관보에 공표한다. 연방 내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단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5항 제3문 연방하원의 임기 개시 후 32개월 이후에 실시된 주 경계의 변경은 차기 선거의 선거구 분할에 비로소 영향을 미친다.

「BWahlG」

§ 3 Wahlkreiskommission und Wahlkreiseinteilung

(2) Der Bundespräsident ernennt eine ständige Wahlkreiskommission. Sie besteht aus dem Präsident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einem Richter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und fünf weiteren Mitgliedern.

(3) Die Wahlkreiskommission hat die Aufgabe, über Änderungen der Bevölkerungszahlen

im Wahlgebiet zu berichten und darzulegen, ob und welche Änderungen der Wahlkreiseinteilung sie im Hinblick darauf für erforderlich hält. Sie kann in ihrem Bericht auch aus anderen Gründen Änderungsvorschläge machen. Bei ihren Vorschlägen zur Wahlkreiseinteilung hat sie die in Absatz 1 genannten Grundsätze zu beachten; ergeben sich nach der Berechnung in Absatz 1 Nr. 2 mehrere mögliche Wahlkreiszuteilungen, erarbeitet sie hierzu Vorschläge. (4) Der Bericht der Wahlkreiskommission ist de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innerhalb von fünfzehn Monaten nach Beginn d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zu erstatten.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leitet ihn unverzüglich dem Deutschen Bundestag zu und veröffentlicht ihn im Bundesanzeiger. Auf Ersuchen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hat die Wahlkreiskommission einen ergänzenden Bericht zu erstatten; für diesen Fall gilt Satz 2 entsprechend. (5) (1~2문 생략) Änderungen von Landesgrenzen, die nach Ablauf des 32. Monats nach Beginn der Wahlperiode vorgenommen werden, wirken sich auf die Wahlkreiseinteilung erst in der nächsten Wahlperiode aus.

○ 획정된 299개의 소선거구는 「연방선거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연방선거법 별지(Anlage)에 기재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2조 선거구역의 구분 제2항 선거구역의 선거구분할은 이 법의 별지에 의한다. 「BWahlG」 § 2 (2) Die Einteilung des Wahlgebietes in Wahlkreise ergibt sich aus der Anlage zu diesem Gesetz.

○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연방 하원 임기개시 후 15개월 이내)과 분할 변경요소 미산입 시점(연방 하원 임기개시 후 32개월) 이외에 획정 절차의 단계별로 기한을 설정한 사항은 없음.

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 인구편차에 관한 법률 규정

- 각 주의 선거구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는 수와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제2호」).
- 개별 선거구 인구수와 전체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편차는 최대 15%(「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제3호」)
- 개별 선거구 인구수가 전제 선거구 평균인구수와 25% 이상(상·하 불문)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제3호」).
- 인구수 산정에서 외국인은 제외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3조」

제1항 선거구 분할 시에는 다음의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주의 경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2. 각 주의 선거구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되는 수와 가능한 한 일치하여야 한다. 해당 선거구의 숫자는 주 명부에서 의석 배분에 관한 제6조 제2항 제2문 내지 제7문의 계산 방식과 동일하다.
3.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전체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 편차가 100분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편차가 100분의 25를 초과할 때에는 새로운 선거구의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선거구는 상호 연관된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시·읍·면·군·특별시의 경계는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한다.

인구수의 산정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외국인법 제1조 제2항에 따른)는 제외된다.

제5항 제1문 주의 경계가 기본법 제29조 제7항에 의한 또는 기타의 주 경계의 변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선거구의 경계도 이와 상응하여 변경된다.(이하 생략)

「BWahlG」

§ 3 Wahlkreiskommission und Wahlkreiseinteilung

(1) Bei der Wahlkreiseinteilung sind folgende Grundsätze zu beachten:

1. die Ländergrenzen sind einzuhalten.

2. Die Zahl der Wahlkreise in den einzelnen Ländern muß deren Bevölkerungsanteil soweit wie möglich entsprechen. Sie wird mit demselben Berechnungsverfahren ermittelt, das nach § 6 Abs. 2 Satz 2 bis 7 für die Verteilung der Sitze auf die Landeslisten angewandt wird.

3. Die Bevölkerungszahl eines Wahlkreises soll von der durchschnittlichen Bevölkerungszahl der Wahlkreise nicht um mehr als 15 vom Hundert nach oben oder unten abweichen; beträgt die Abweichung mehr als 25 vom Hundert, ist eine Neuabgrenzung vorzunehmen.

4. Der Wahlkreis soll ein zusammenhängendes Gebiet bilden.

5. Die Grenzen der Gemeinden, 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sollen nach Möglichkeit eingehalten werden.

Bei Ermittlung der Bevölkerungszahlen bleiben Ausländer (§ 2 Abs. 1 des Aufenthaltsgesetzes) unberücksichtigt.

(5) Werden Landesgrenzen nach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über das Verfahren bei sonstigen Änderungen des Gebietsbestandes der Länder nach Artikel 29 Abs. 7 des Grundgesetzes geändert, so ändern sich entsprechend auch die Grenzen der betroffenen Wahlkreise.(이하 생략)

○ 선거구 획정에 있어 미성년 인구의 산입여부(2012.01.31)[1)]

- 선거구 분할시 고려되는 인구수는 상하편차 15%를 원칙으로 함(「연방선거법 제3조 제3호」).
- 선거구 분할시 인구편차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선거구 획정은 무효(「연방선거법 제3조 제3호」)
- 인구편차의 산정시 외국인의 수는 제외(「연방선거법 제3조 단서)

1) 연반헌법재판소, 2012.01.31, 사건번호 2 BvC 3/11

- 하지만 인구수 산정시 「연방선거법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보유여부는 인구수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음.
- 2009년 10월 14일에 연방의회에 신청된 선거소청에서 청구인은 선거구 분할에 있어서 인구수 산정이 선거권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 연방의회는 2011년 2월 10일에 해당 소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
- 해당 청구인은 2011년 3월 29일 선거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
- 선거심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미성년자의 수에 대해 조사
- 각 주의 미성년자 수는 2008년 기준 전체 인구 평균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각 주마다 차이나는 미성년자의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선거권의 등가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마. 기타 관련 입법동향, 주요이슈, 주요판례 등

○ 현행 선거구는 2012년 4월 12일에 확정[2)]

○ 현행 선거구 분할 현황(「연방선거법 제2조 제2항 별지」[3)])

주		선거구	
1	Schleswig-Holstein	1	Flensburg – Schleswig
		2	Nordfriesland – Dithmarschen Nord
		3	Steinburg – Dithmarschen Süd
		4	Rendsburg-Eckernförde
		5	Kiel
		6	Plön – Neumünster
		7	Pinneberg
		8	Segeberg – Stormarn-Mitte
		9	Ostholstein – Stormarn-Nord
		10	Herzogtum Lauenburg – Stormarn-Süd
		11	Lübeck

2) 연방관보 I, 2012.04.12, S. 518(BGBl. I S. 518)

3) http://www.gesetze-im-internet.de/bwahlg/anlage.html

2	Mecklenburg-Vorpommern	12	Schwerin – Ludwigslust-Parchim I – Nordwestmecklenburg I
		13	Ludwigslust-Parchim II –Nordwestmecklenburg II –Landkreis Rostock I
		14	Rostock – Landkreis Rostock II
		15	Vorpommern-Rügen –Vorpommern-Greifswald I
		16	Mecklenburgische Seenplatte I – Vorpommern-Greifswald II
		17	Mecklenburgische Seenplatte II – Landkreis Rostock III
3	Hamburg	18	Hamburg-Mitte
		19	Hamburg-Altona
		20	Hamburg-Eimsbüttel
		21	Hamburg-Nord
		22	Hamburg-Wandsbek
		23	Hamburg-Bergedorf – Harburg
4	Niedersachsen	24	Aurich – Emden
		25	Unterems
		26	Friesland – Wilhelmshaven – Wittmund
		28	Delmenhorst – Wesermarsch – Oldenburg-Land
		29	Cuxhaven – Stade II
		30	Stade I – Rotenburg II
		31	Mittelems
		32	Cloppenburg – Vechta
		33	Diepholz – Nienburg I
		34	Osterholz – Verden
		35	Rotenburg I – Heidekreis
		36	Harburg
		37	Lüchow-Dannenberg – Lüneburg
		38	Osnabrück-Land
		39	Stadt Osnabrück
		40	Nienburg II – Schaumburg
		41	Stadt Hannover I
		42	Stadt Hannover II
		43	Hannover-Land I
		44	Celle – Uelzen
		45	Gifhorn – Peine
		46	Hameln-Pyrmont – Holzminden
		47	Hannover-Land II
		48	Hildesheim
		49	Salzgitter – Wolfenbüttel
		50	Braunschweig
		51	Helmstedt – Wolfsburg
		52	Goslar – Northeim – Osterode
		53	Göttingen
5	Bremen	54	Bremen I
		55	Bremen II – Bremerhaven
6	Brandenburg	56	Prignitz – Ostprignitz-Ruppin – Havelland I
		57	Uckermark – Barnim I
		58	Oberhavel – Havelland II
		59	Märkisch-Oderland – Barnim II
		60	Brandenburg an der Havel –Potsdam-Mittelmark I – Havelland III – Teltow-Fläming I
		61	Potsdam – Potsdam-Mittelmark II – Teltow-Fläming II
		62	Dahme-Spreewald –Teltow-Fläming III –Oberspreewald-Lausitz I
		63	Frankfurt (Oder) – Oder-Spree

		64	Cottbus – Spree-Neiße
		65	Elbe-Elster – Oberspreewald-Lausitz II
7	Sachsen-Anhalt	66	Altmark
		67	Börde – Jerichower Land
		68	Harz
		69	Magdeburg
		70	Dessau – Wittenberg
		71	Anhalt
		72	Halle
		73	Burgenland – Saalekreis
		74	Mansfeld
8	Berlin	75	Berlin-Mitte
		76	Berlin-Pankow
		77	Berlin-Reinickendorf
		78	Berlin-Spandau – Charlottenburg Nord
		79	Berlin-Steglitz-Zehlendorf
		80	Berlin-Charlottenburg-Wilmersdorf
		81	Berlin-Tempelhof-Schöneberg
		82	Berlin-Neukölln
		83	Berlin-Friedrichshain-Kreuzberg – Prenzlauer Berg Ost
		84	Berlin-Treptow-Köpenick
		85	Berlin-Marzahn-Hellersdorf
		86	Berlin-Lichtenberg
9	Nordrhein-Westfalen	87	Aachen I
		88	Aachen II
		89	Heinsberg
		90	Düren
		91	Rhein-Erft-Kreis I
		92	Euskirchen – Rhein-Erft-Kreis II
		93	Köln I
		94	Köln II
		95	Köln III
		96	Bonn
		97	Rhein-Sieg-Kreis I
		98	Rhein-Sieg-Kreis II
		99	Oberbergischer Kreis
		100	Rheinisch-Bergischer Kreis
		101	Leverkusen – Köln IV
		102	Wuppertal I
		103	Solingen – Remscheid – Wuppertal II
		104	Mettmann I
		105	Mettmann II
		106	Düsseldorf I
		107	Düsseldorf II
		108	Neuss I
		109	Mönchengladbach
		110	Krefeld I – Neuss II
		111	Viersen
		112	Kleve
		113	Wesel I
		114	Krefeld II – Wesel II
		115	Duisburg I
		116	Duisburg II

		117	Oberhausen – Wesel III
		118	Mülheim – Essen I
		119	Essen II
		120	Essen III
		121	Recklinghausen I
		122	Recklinghausen II
		123	Gelsenkirchen
		124	Steinfurt I – Borken I
		125	Bottrop – Recklinghausen III
		126	Borken II
		127	Coesfeld – Steinfurt II
		128	Steinfurt III
		129	Münster
		130	Warendorf
		131	Gütersloh I
		132	Bielefeld – Gütersloh II
		133	Herford – Minden-Lübbecke II
		134	Minden-Lübbecke I
		135	Lippe I
		136	Höxter – Lippe II
		137	Paderborn – Gütersloh III
		138	Hagen – Ennepe-Ruhr-Kreis I
		139	Ennepe-Ruhr-Kreis II
		140	Bochum I
		141	Herne – Bochum II
		142	Dortmund I
		143	Dortmund II
		144	Unna I
		145	Hamm – Unna II
		146	Soest
		147	Hochsauerlandkreis
		148	Siegen-Wittgenstein
		149	Olpe – Märkischer Kreis I
		150	Märkischer Kreis II
10	Sachsen	151	Nordsachsen
		152	Leipzig I
		153	Leipzig II
		154	Leipzig-Land
		155	Meißen
		156	Bautzen I
		157	Görlitz
		158	Sächsische Schweiz-Osterzgebirge
		159	Dresden I
		160	Dresden II – Bautzen II
		161	Mittelsachsen
		162	Chemnitz
		163	Chemnitzer Umland – Erzgebirgskreis II
		164	Erzgebirgskreis I
		165	Zwickau
		166	Vogtlandkreis
11	Hessen	167	Waldeck
		168	Kassel
		169	Werra-Meißner – Hersfeld-Rotenburg
		170	Schwalm-Eder

		171	Marburg
		172	Lahn-Dill
		173	Gießen
		174	Fulda
		175	Main-Kinzig – Wetterau II – Schotten
		176	Hochtaunus
		177	Wetterau I
		178	Rheingau-Taunus – Limburg
		179	Wiesbaden
		180	Hanau
		181	Main-Taunus
		182	Frankfurt am Main I
		183	Frankfurt am Main II
		184	Groß-Gerau
		185	Offenbach
		186	Darmstadt
		187	Odenwald
		188	Bergstraße
12	Thüringen	189	Eichsfeld – Nordhausen –Unstrut-Hainich-Kreis I
		190	Eisenach – Wartburgkreis –Unstrut-Hainich-Kreis II
		191	Kyffhäuserkreis – Sömmerda –Weimarer Land I
		192	Gotha – Ilm-Kreis
		193	Erfurt – Weimar – Weimarer Land II
		194	Gera – Jena – Saale-Holzland-Kreis
		195	Greiz – Altenburger Land
		196	Sonneberg – Saalfeld-Rudolstadt – Saale-Orla-Kreis
		197	Suhl – Schmalkalden-Meiningen – Hildburghausen
13	Rheinland-Pfalz	198	Neuwied
		199	Ahrweiler
		200	Koblenz
		201	Mosel/Rhein-Hunsrück
		202	Kreuznach
		203	Bitburg
		204	Trier
		205	Montabaur
		206	Mainz
		207	Worms
		208	Ludwigshafen/Frankenthal
		209	Neustadt – Speyer
		210	Kaiserslautern
		211	Pirmasens
		212	Südpfalz
14	Bayern	213	Altötting
		214	Erding – Ebersberg
		215	Freising
		216	Fürstenfeldbruck
		217	Ingolstadt
		218	München-Nord
		219	München-Ost
		220	München-Süd
		221	München-West/Mitte
		222	München-Land
		223	Rosenheim
		224	Starnberg

		225	Traunstein
		226	Weilheim
		227	Deggendorf
		228	Landshut
		229	Passau
		230	Rottal-Inn
		231	Straubing
		232	Amberg
		233	Regensburg
		234	Schwandorf
		235	Weiden
		236	Bamberg
		237	Bayreuth
		238	Coburg
		239	Hof
		240	Kulmbach
		241	Ansbach
		242	Erlangen
		243	Fürth
		244	Nürnberg-Nord
		245	Nürnberg-Süd
		246	Roth
		247	Aschaffenburg
		248	Bad Kissingen
		249	Main-Spessart
		250	Schweinfurt
		251	Würzburg
		252	Augsburg-Stadt
		253	Augsburg-Land
		254	Donau-Ries
		255	Neu-Ulm
		256	Oberallgäu
		257	Ostallgäu
15	Baden-Württemberg	258	Stuttgart I
		259	Stuttgart II
		260	Böblingen
		261	Esslingen
		262	Nürtingen
		263	Göppingen
		264	Waiblingen
		265	Ludwigsburg
		266	Neckar-Zaber
		267	Heilbronn
		268	Schwäbisch Hall – Hohenlohe
		269	Backnang – Schwäbisch Gmünd
		270	Aalen – Heidenheim
		271	Karlsruhe-Stadt
		272	Karlsruhe-Land
		273	Rastatt
		274	Heidelberg
		275	Mannheim
		276	Odenwald – Tauber
		277	Rhein-Neckar
		278	Bruchsal – Schwetzingen

		279	Pforzheim
		280	Calw
		281	Freiburg
		282	Lörrach – Müllheim
		283	Emmendingen – Lahr
		284	Offenburg
		285	Rottweil – Tuttlingen
		286	Schwarzwald-Baar
		287	Konstanz
		288	Waldshut
		289	Reutlingen
		290	Tübingen
		291	Ulm
		292	Biberach
		293	Bodensee
		294	Ravensburg
		295	Zollernalb – Sigmaringen
16	Saarland	296	Saarbrücken
		297	Saarlouis
		298	St. Wendel
		299	Homburg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법

1) 의석배분 대상 정당 기준

○ 정당명부에 의한 의석배분에 있어서는 단지 선거구에서 최소 5% 이상의 유효한 제2 투표를 얻은 정당 또는 최소 3개의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함(「연방선거법 제6조제3항」).

[관련 규정]
「연방선거법」
제6조 (정당명부 선거)
(3)정당명부에 의한 의석배분에 있어서는 단지 선거구에서 최소 5%이상의 유효한 제2 투표를 얻은 정당 또는 최소 3개의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수의 민족주의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는 제1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BWahlG」
§ 6 Wahl nach Landeslisten
(3) Bei Verteilung der Sitze auf die Landeslisten werden nur Parteien berücksichtigt, die mindestens 5 Prozent der im Wahlgebiet abgegebenen gültigen Zweitstimmen erhalten oder in mindestens drei Wahlkreisen einen Sitz errungen haben. Satz 1

findet auf die von Parteien nationaler Minderheiten eingereichten Listen keine Anwendung. (이하 생략)

2) 의석배분 방법

- 독일연방하원은 5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의원선거(Personenwahl)와 비례대표선거(Verhaltniswahl)가 결합된 방식의 선거임(「연방 선거법 제1조제1항」.)
- 지역구 직접선거 방식의 제1표와 각 정당이 주 단위로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대상으로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제2표로 나뉘어지는 1인 2표제 방식임.
-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정당별로 득표한 전체 선거구의 제2표를 합산함(「연방선거법 제6조제1항」).
- 1차 의석할당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모두 합한 전체 598석을 각 주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각 주별로 배정함(「연방선거법 제6조제2항」).
- 전체 선거구에서 각 정당별로 획득한 제2표의 총수를 의석분배를 위해 산정된 할당분모로 나눈 몫이 각 정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수가 되며, 나눈 몫은 반올림하여 계산함(「연방선거법 제6조제2항」).
- 각 정당에게 각 주단위로 배정된 의석수와 해당 주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의 당선자 수를 비교해 더 큰 의석수가 해당 주에서의 해당 정당에게 배정된 최소보장의석이 됨.
- 2차 의석할당은 각 정당별로 획득한 제2표의 총수를 나눈 몫이 모든 정당의 최소보장의석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제수를 구하여 계산하며, 제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총 의석이 늘어난 만큼이

초과의석이 됨.

○ 최소보장의석과 최종의석의 차이를 균형의석(Ausgleichsmandate)이라고 하며, 최소 하나의 정당은 균형의석이 0석이 되도록 계산하는 것임.

○ 이상에 따라 각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를 각 주별로 획득한 득표수에 기초해 배분함.

[관련 규정]
「연방선거법」
제6조 (정당명부 선거)
(1) 주 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각 주 후보자 명부에 행사된 제2표를 합산한다. 제3항에 따라 의석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주에 정당명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제20조 제3항에 의해 또는 정당에서 추천받은 후보자에게 제1표를 투표한 투표자의 제2표는 산입하지 않는다. 전체 국회의원의 수(제1조 제1항)에서, 제2문에서 언급된 당선된 후보자의 수는 제외된다.
(2) 우선적인 의석할당은 전체 의석수를 제2문 내지 제7문에 기재된 계산방식에 따라 각 주의 인구수 비율이 되며, 각 주에서 제1항 제3문에 따라 남아있는 의석은 정당명부에 대한 제2 투표수를 기초로 배분된다. 선거구역에서 획득된 제2표의 총수를 할당분모(Zuteilungsdivisor)로 나눈 후에 발생하는 만큼의 의석이 각각의 주후보자명부에 배분된다. 0.5이하의 소수점 자리는 바로 아래 자연수로 내림하며 0.5이상의 소수점 자리는 바로 위의 자연수로 올림한다. 0.5로 떨어지는 소수점 자리는 배분의석의 수가 유지되도록 올림하거나 내림한다; 그 때 수개의 의석할당이 예견되면 연방선거위원장에 의하여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할당분모는 배분되어져야 할 만큼의 의석이 전부 주후보자명부에 돌아가도록 정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모든 주후보자명부의 제2표의 총 득표수가 제1항 제3문에 따라 제외된 의석의 수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 배분되어야 할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이 주후보자명부에 배분되면 할당분모는 산정 시에 배분총수가 나오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너무 적은 의석이 주후보자명부에 배분되면 할당분모는 그에 상응하도록 하향조정 되어야 한다.
(3)정당명부에 의한 의석배분에 있어서는 단지 선거구에서 최소 5%이상의 유효한 제2 투표를 얻은 정당 또는 최소 3개의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수의 민족주의 정단이 제출한 명부에는 제1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각 정당명부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에서 각 주의 선거구에서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제5조)는 제외된다. 선거구에서 정당이 획득한 의석이 제2항 및 제3항에서 배분된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그대로 인정된다.
(5)제1항 제3문에 따라 배분된 의석의 숫자는, 제4항 제1문에 따라 정당명부에 대해 배분된 의석수로는 계산될 수 없는, 각 정당이 제6항 제1문에 따른 제2차 의석배분에서 획득한 숫자까지 증가되는데, 이 숫자는 최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차 의석배분에서 정당

이 얻은 의석수에 선거구에서 추가적으로 획득한 의석수를 더한 수까지 된다. 전체 의석수는 여기에서 차이난 수만큼 증가한다.

(6)제5항 제1문에 따라 부여된 의석은 언제나 전체 연방에 걸쳐 제2항 제2문 내지 제7문에 기재된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 제2 투표의 수에 따라 제3항에 따라 대상이 된 정당에 배분된다. 제2항 제2문 내지 제7문에 기재된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정당명부에 대한 2차 투표의 수에 따라 해당 의석은 정당에 배분된다; 이 경우 각 정당명부는 적어도 각 정당이 획득한 선거구의 의석수만큼이 된다. 각 정당이 정당명부에서 획득한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각 주의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제외된다. 산정된 의석은 주 명부에서 이미 확정된 순서대로 채워진다.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주 명부와 관계없이 남게된다. 주 명부의 지정된 후보자 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정되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남겨둔다.

(7)만약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정당이 모든 산정대상이 된 정당의 전체 2차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고 의석수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의석은 과반의석 이상이 될 때까지 배분된다. 해당 의석은 제6항 제2문 내지 제6문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다. 그러한 경우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전체의석은 차이난 숫자만큼 증가하게 된다.

「BWahlG」

§ 6 Wahl nach Landeslisten

(1) Für die Verteilung der nach Landeslisten zu besetzenden Sitze werden die für jede Landesliste abgegebenen Zweitstimmen zusammengezählt.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dabei die Zweitstimmen derjenigen Wähler, die ihre Erststimme für einen im Wahlkreis erfolgreichen Bewerber abgegeben haben,, der gemäß § 20 Absatz 3 oder von einer Partei vorgeschlagen ist,, die nach Absatz 3 bei der Sitzverteilung nicht berücksichtigt wird oder für die in dem betreffenden Land keine Landesliste zugelassen ist. Von der Gesamtzahl der Abgeordneten (§ 1 Absatz 1) wird die Zahl der erfolgreichen Wahlkreisbewerber abgezogen, die in Satz 2 genannt sind.

(2) In einer ersten Verteilung wird zunächst die Gesamtzahl der Sitze (§ 1 Absatz 1) in dem in Satz 2 bis 7 beschriebenen Berechnungsverfahren den Ländern nach deren Bevölkerungsanteil (§ 3 Absatz 1) und sodann in jedem Land die Zahl der dort nach Absatz 1 Satz 3 verbleibenden Sitze auf der Grundlage der zu berücksichtigenden Zweitstimmen den Landeslisten zugeordnet. Jede Landesliste erhält so viele Sitze, wie sich nach Teilung der Summe ihrer erhaltenen Zweitstimmen durch einen Zuteilungsdivisor ergeben. Zahlenbruchteile unter 0,5 werden auf die darunter liegende ganze Zahl abgerundet, solche über 0,5 werden auf die darüber liegende ganze Zahl aufgerundet. Zahlenbruchteile, die gleich 0,5 sind, werden so aufgerundet oder abgerundet, dass die Zahl der zu vergebenden Sitze eingehalten wird; ergeben sich dabei mehrere mögliche Sitzzuteilungen, so entscheidet das vom Bundeswahlleiter zu ziehende Los. Der Zuteilungsdivisor ist so zu bestimmen, dass insgesamt so viele

Sitze auf die Landeslisten entfallen, wie Sitze zu vergeben sind. Dazu wird zunächst die Gesamtzahl der Zweitstimmen aller zu berücksichtigenden Landeslisten durch die Zahl der jeweils nach Absatz 1 Satz 3 verbleibenden Sitze geteilt. Entfallen danach mehr Sitze auf die Landeslisten, als Sitze zu vergeben sind, ist der Zuteilungsdivisor so heraufzusetzen, dass sich bei der Berechnung die zu vergebende Sitzzahl ergibt; entfallen zu wenig Sitze auf die Landeslisten, ist der Zuteilungsdivisor entsprechend herunterzusetzen.

(3) Bei Verteilung der Sitze auf die Landeslisten werden nur Parteien berücksichtigt, die mindestens 5 Prozent der im Wahlgebiet abgegebenen gültigen Zweitstimmen erhalten oder in mindestens drei Wahlkreisen einen Sitz errungen haben. Satz 1 findet auf die von Parteien nationaler Minderheiten eingereichten Listen keine Anwendung.

(4) Von der für jede Landesliste so ermittelten Sitzzahl wird die Zahl der von der Partei in den Wahlkreisen des Landes errungenen Sitze (§ 5) abgerechnet.In den Wahlkreisen errungene Sitze verbleiben einer Partei auch dann, wenn sie die nach den Absätzen 2 und 3 ermittelte Zahl übersteigen.

(5) Die Zahl der nach Absatz 1 Satz 3 verbleibenden Sitze wird so lange erhöht, bis jede Partei bei der zweiten Verteilung der Sitze nach Absatz 6 Satz 1 mindestens die bei der ersten Verteilung nach den Absätzen 2 und 3 für sie ermittelten zuzüglich der in den Wahlkreisen errungenen Sitze erhält,까지 die nicht nach Absatz 4 Satz 1 von der Zahl der für die Landesliste ermittelten Sitze abgerechnet werden können. Die Gesamtzahl der Sitze (§ 1 Absatz 1) erhöht sich um die Unterschiedszahl.

(6) Die nach Absatz 5 Satz 1 zu vergebenden Sitze werden in jedem Fall bundesweit nach der Zahl der zu berücksichtigenden Zweitstimmen in dem in Absatz 2 Satz 2 bis 7 beschriebenen Berechnungsverfahren auf die nach Absatz 3 zu berücksichtigenden Parteien verteilt. In den Parteien werden die Sitze nach der Zahl der zu berücksichtigenden Zweitstimmen in dem in Absatz 2 Satz 2 bis 7 beschriebenen Berechnungsverfahren auf die Landeslisten verteilt; dabei wird jeder Landesliste mindestens die Zahl der in den Wahlkreisen des Landes von der Partei errungenen Sitze zugeteilt. Von der für jede Landesliste ermittelten Sitzzahl wird die Zahl der von der Partei in den Wahlkreisen des Landes errungenen Sitze (§ 5) abgerechnet. Die restlichen Sitze werden aus der Landesliste in der dort festgelegten Reihenfolge besetzt. Bewerber, die in einem Wahlkreis gewählt sind, bleiben auf der Landesliste unberücksichtigt. Entfallen auf eine Landesliste mehr Sitze, als Bewerber benannt sind, so bleiben diese Sitze unbesetzt.

(7) Erhält bei der Verteilung der Sitze nach den Absätzen 2 bis 6 eine Partei, auf die mehr als die Hälfte der Gesamtzahl der Zweitstimmen aller zu berücksichtigenden Parteien entfallen ist, nicht mehr als die Hälfte der Sitze, werden ihr weitere Sitze zugeteilt, bis auf sie ein Sitz mehr als die Hälfte der Sitze entfällt. Die Sitze werden in der Partei entsprechend Absatz 6 Satz 2 bis 6 verteilt. In einem solchen Falle erhöht sich die nach Absatz 5 ermittelte Gesamtzahl der Sitze (§ 1 Absatz 1) um die Unterschiedszahl.

- 현행 비례대표에 관한 「연방선거법 제6조」는 지난 2012년 7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4]을 받음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후 개정[5]되어 5월 9일부터 시행됨.
- 해당 판결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의석 할당에 관한「연방선거법 제6조 제1항 제1호」, 잔여의석 처리방식에 관한「 제6조 제2a항 제1호」였으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위헌판결의 이유였음.
- 초과의석의 처리방식을 규정한 「연방선거법 제6조 제5항」의 경우 초과의석의 규모에 따라 위헌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연방선거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의석할당의 기준을 기존의 투표수에서 각 주 단위 인구수로 변경하였음.
- 「제6조 제2a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잔여투표 처리방식은 별도의 개정 없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됨.
- 「연방선거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각 정당의 정당명부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에 보정의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함.

4) 2012.07.25 판결, 사건번호 - 2 BvF 3/11, - 2 BvR 2670/11, - 2 BvE 9/11 병합심리

5) 2013.05.03, BGBl. I S. 1082

나. 당선인 결정

-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경우 각 정당은 주 단위로 비례대표로 선출할 후보자명부를 작성함.
- 각 정당의 주 후보자명부에 대한 득표수의 확정은 주 단위 선거위원회에서 담당함(「연방선거법 제42조제1항」).
- 주 단위 선거위원회는 주에서 각 정당에 대한 제2표의 득표결과를 조사하고, 선거권자의 수, 투표자의 수, 유효 및 무효인 제2표의 수, 각 정당별 제2표의 유효 득표수 및 의석분배를 위해 정산된 득표수를 확정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주 후보자명부에 대한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주 선거위원회가 각 투표구의 선거위원회에 집계한 투표수, 득표결과 등 확정결과에 대해 수정할 권한이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각 정당에 배분되는 의석수와 주 단위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자의 확정은 연방선거위원회가 담당함(「연방선거법 제42조제2항」).
- 주 후보자명부에 대한 확정된 투표결과는 연방선거위원장이 직접 공표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 각 정당 주 후보자명부의 당선자에 대한 통지는 주 단위 선거위원장이 담당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규정]
「연방선거법」
제42조 (주후보자명부선거결과의 확정)
제1항 주선거위원회는 그 주에서 각 주후보자 명부에 투표된 득표수를 확정한다.
제2항 연방선거위원회는 각 주후보자명부에 배분되는 의석수와 당선자를 확정한다. 주선거위원장은 당선된 후보자들에게 통지하고 연방선거구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고 나면 선거 이후 첫 번째 의회가 개최됨으로써 독일연방하원의 의원이 된다는 것과 의원직 취득의 거부는 해당 주의 선거위원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선자들에게 고지한다.

「BWahlG」

§ 42 Feststellung des Ergebnisses der Landeslistenwahl
(1) Der Landeswahlausschuß stellt fest, wieviel Stimmen im Land für die einzelnen Landeslisten abgegeben worden sind.

(2) Der Bundeswahlausschuß stellt fest, wieviel Sitze auf die einzelnen Landeslisten entfallen und welche Bewerber gewählt sind. Der Landeswahlleiter benachrichtigt die gewählten Bewerber und weist sie darauf hin, dass sie nach der abschließenden Feststellung des Ergebnisses für das Wahlgebiet durch den Bundeswahlausschuss die Mitgliedschaft im Deutschen Bundestag mit Eröffnung der ersten Sitzung nach der Wahl erlangen und eine Ablehnung des Erwerbs der Mitgliedschaft gegenüber dem Landeswahlleiter erfolgen muss.

제77조 (주에서의 제2표 선거결과의 산출 및 확정)
제2항 주선거위원장에 의한 보고가 있은 후 주선거위원회는 주 내에서 제2표의 득표결과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를 확정한다.
1. 선거권자의 수
2. 투표자의 수
3. 유효 및 무효인 제2표의 수
4. 주 후보자명부별 제2표의 유효득표수
5. 연방선거법 제6조제1항제2문의 경우에 의석배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주 후보자명부별 제2표의 수(정산득표수).
주선거위원회는 투표구 선거위원회와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확정결과에 대하여 계산상의수정을 행할 권한이 있다.
제3항 이러한 확정에 따라 연방선거위원장은 제2항제1문에 따른 선거결과를 자신이 직접 공표한다.
(이하 생략)

제80 조(당선된 주 후보자명부 후보자에 대한 통지)
제1항 주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위원장에 의하여 최종 선거결과에 대한 구두통보가 있은 후에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선언된 주 후보자명부 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연방선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안내한다. (이하 생략)

「BWO」

§ 77 Ermittlung und Feststellung des Zweitstimmenergebnisses im Land
(2) Nach Berichterstattung durch den Landeswahlleiter ermittelt der Landeswahlausschuss das Zweitstimmenergebnis im Land und stellt fest

1.die Zahl der Wahlberechtigten,
2.die Zahl der Wähler,
3.die Zahlen der gültigen und ungültigen Zweitstimmen,
4.die Zahlen der für die einzelnen Landeslisten abgegebenen gültigen Zweitstimmen und
5.im Falle des § 6 Abs. 1 Satz 2 des Bundeswahlgesetzes die Zahlen der für die Sitzverteilung zu berücksichtigenden Zweitstimmen der einzelnen Landeslisten (bereinigte Zahlen).
Der Landeswahlausschuss ist berechtigt, rechnerische Berichtigungen an den Feststellungen der Wahlvorstände und Kreiswahlausschüsse vorzunehmen.
(3) Im Anschluss an die Feststellung gibt der Landeswahlleiter das Wahlergebnis mit den in Absatz 2 Satz 1 bezeichneten Angaben mündlich bekannt.

§ 80 Benachrichtigung der gewählten Landeslistenbewerber
(1) Der Landeswahlleiter benachrichtigt die vom Bundeswahlausschuss für gewählt erklärten Landeslistenbewerber nach der mündlichen Bekanntgabe des endgültigen Wahlergebnisses durch den Bundeswahlleiter und weist sie auf die Vorschriften des § 45 Abs. 1 des Bundeswahlgesetzes hin. Bei einer Wiederholungswahl (§ 44 des Bundeswahlgesetzes) benachrichtigt er die Gewählten mittels Zustellung (§ 87 Abs. 1) und weist sie auf die Vorschriften des § 45 Abs. 3 des Bundeswahlgesetzes hin.

다. 의석배분 방법 사례예시

○ 제1단계로 인구에 비례해 총 598석을 주별로 배정함.

- 독일 하원 의회의 기본 의석수는 598석이며, 지역구 직접선거 299명, 비례대표 299석으로 구성됨.
- 598석을 인구에 비례해서 주별로 [표-1]과 같이 분배하여 기준의석을 산출함.

[표-1] 주 단위 1단계 기준의석 산출

주	인구 수	제수	의석	
			몫	반올림
Schleswig-Holstein	2,686,085		21.65	22
Mecklenburg-Vorpommern	1,585,032		12.78	13
Hamburg	1,559,655		12.57	13

Niedersachsen	7,354,892		59.29	59
Bremen	575,805		4.64	5
Brandenburg	2,418,267		19.49	19
Sachsen-Anhalt	2,247,673		18.12	18
Berlin	3,025,288	:124,050=	24.39	24
Nordrhein-Westfalen	15,895,182		128.14	128
Sachsen	4,005,278		32.29	32
Hessen	5,388,350		43.44	43
Thuringen	2,154,202		17.37	17
Rheinland-Pfalz	3,672,888		29.61	30
Bayern	11,353,264		91.52	92
Baden-Wurttemberg	9,482,902		76.44	76
Saarland	919,402		7.41	7
합계	74,324,165			598

- 제수(除數, divisor)의 경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를 나누어 그 몫을 더하였을 때 총 의석이 598석이 될 수 있는 수를 구하여 적용하는 것임.

○ 제2단계로 정당별 최소보장의석을 산정함.

- 2단계로 주 단위로 정당별 제2투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정함.
- [표-1]에서 17석을 배정받은 튀링겐 주를 예로 살펴보면 [표-2]와 같음.

[표-2]주 단위 최소보장의석 산정 예시(튀링겐 주)

정당	제2표 득표수	제수	의석(A)		지역구 당선자수(B)	최소보장 의석	초과 의석
			몫	반올림			
CDU	477,283	:60,000=	7.95	8	9	9	1
DIE LINKE	288,615		4.81	5	0	5	0
SPD	198,714		3.31	3	0	3	0
GRUNE	60,511		1.01	1	0	1	0
합계	1,025,123			17			

- 제2표 득표수를 분배해 구한 의석(A)과 지역구 당선자 수(B) 중 더 많은 의석이 최소보장의석이 됨.
- 지역구 당선자 수(B)가 제2표 분배의석(A)보다 많은 경우를 초과의석이라 함.
- 주 단위 최소보장의석을 모두 합해 전체 연방의 최소보장의석을 산정함.

정당	최소보장의석
CDU	242
DIE LINKE	183
SPD	60
GRUNE	61
CSU	56
합계	602

❍ 제3단계로 초과의석으로 인해 깨어진 투표의 비례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표-3]과 같이 연방의회 의석수를 조정하여 최종의석을 구함.

[표-3]최종의석 산정

정당	최소보장 의석	제2표 득표수	제수	의석		균형의석
				몫	반올림	
CDU	242	14,921,877		255.42	255	13
SPD	183	11,252,215		192.61	193	10
DIELINKE	60	3,755,699	:58.420=	64.29	64	4
GRUNE	61	3,694,057		63.23	63	2
CSU	56	3,243,569		55.52	56	0
합계	602	36,867,417			631	29

- 최종의석 산정과정에서의 제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최소보장의석이 삭감되지 않는 의석수까지 의석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함.

○ 마지막으로 정당 내에서 최종의석을 득표수에 비례해 주 단위로 배정하여 주 단위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정함.

미 국

미국 연구관 : 이승연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가. 선거구 획정 주체[6)]

1) 주 의회 선거구 획정 주체

○ 주 의회 전담 (32개 주)

- 주 상원 선거구 및 주 하원 선거구 모두 일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치며, 주지사의 거부권이 인정됨.
- 코네티컷, 메인 주는 양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코네티컷,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양원 합동 결의를 진행함.

○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ssion, 5개 주)

- 아이오와,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오하이오
-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되 선거구 안(案)을 자문위원회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 선거구 안(案)을단, 자문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의회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 대체위원회

- 주 의회가 획정 권한을 갖되, 일정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대체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주(7개 주)

6) 전미주의회의회 https://www.justice.gov/crt/about-section-5-voting-rights-act (2016년 3월1일 검색)
http://www.redistrictinginamerica.org / (2016년 3월1일 검색)

-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텍사스, 오리건 주
- 획정 기한은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그 획정 기한이 지나면 바로 대체위원회가 획정 권한을 가짐.

○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ssion, 7개 주)

- 알칸소, 오하이오, 콜로라도, 하와이, 미주리,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
- 알칸소, 오하이오 주는 특정 의원이 위원회를 임명함.
- 하와이, 미주리,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의회 지도부 또는 정당 지도부들이 여러 출신들로 구성되도록 함.
-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결의하며, 결의된 획정안은 주 법원에서 위헌여부를 확인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함.

○ 독립 위원회(Independence commission, 6개 주)

-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몬태나, 워싱턴 주
- 의회의 의원들이 직접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그림1.] 주 의회 선거구 획정주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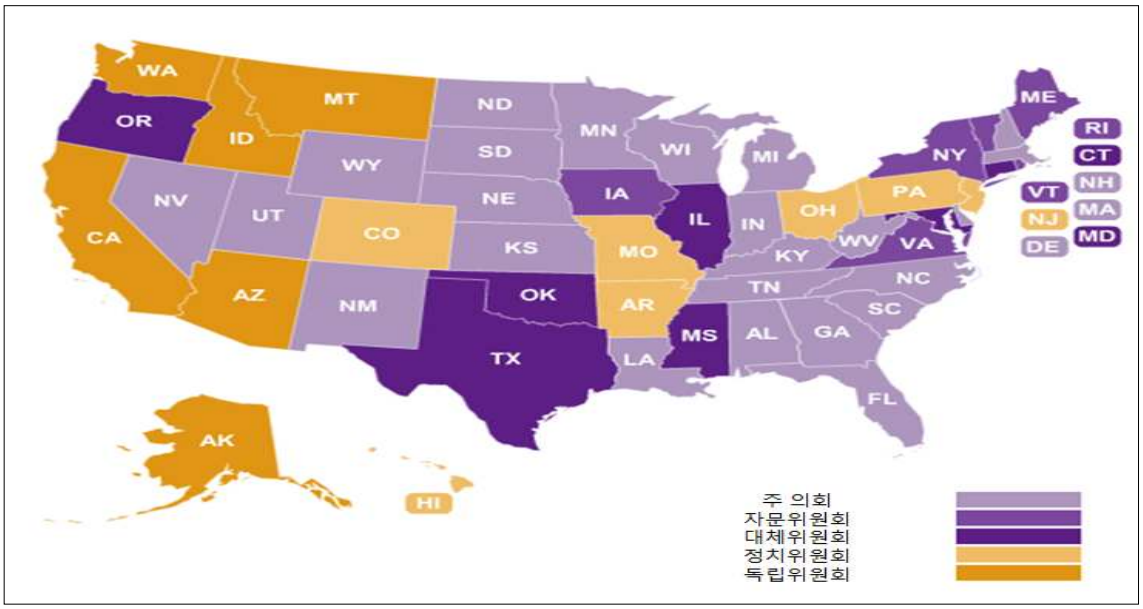

7) 로욜라 법과대학 홈페이지 http://redistricting.lls.edu/who.php (2016년 3월 1일 검색)

2)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 주체

○ 주 의회(42개 주)

- 주 의회 선거구 획정과 같이 일반법률 제정절차를 거치며 주지사 거부권을 인정함.
- 코네티컷, 메인 주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정치위원회(2개 주)

- 하와이, 뉴저지는 주 의회와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 모두 의회 내 정치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짐.

○ 독립 위원회(6개 주)

-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몬태나, 워싱턴 주 모두 독립 위원회가 연방 의회와 주 의회 선거구 획정을 담당함.

[그림2.]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 주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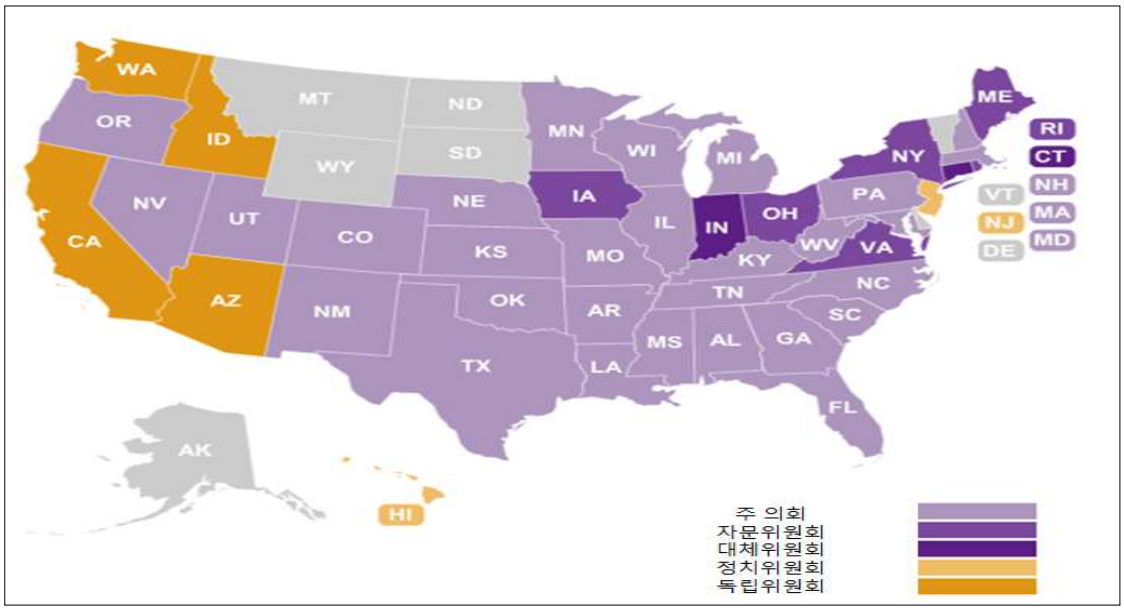

8) 로욜라 법과대학 홈페이지 http://redistricting.lls.edu/who.php (2016년 3월 1일 검색)

나. 선거구 획정 기관의 구성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원수와 위원 선정 방식은 주마다 상이하며, 인원수나 위원선정방식이 선거구획정에 있어 어떠한 결과적 차이를 미친다고 단정 짓기가 어려움.

○ 따라서 인원수와 선정방식의 형식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통된 범주로 분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음.

1) 선거구 획정 기관 구성 예시

○ 자문위원회

- 뉴욕[9]
  - · 일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치되, 6명의 자문위원회가 구성함.
  - ·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대표가 각각 현역 의원 1명씩, 비 현역 의원 1명씩, 총 4명을 선출함.
  - · 상원, 하원의 소수당 대표가 각각 현역 의원 1명씩을 선출함.
  - · 자문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되, 의회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
- 로드 아일랜드[10]
  - · 일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치되 2011년부터 18명의 자문위원회를 거침. 구속력 없음.
  - · 양원의 각 다수당 대표가 각각 현역 의원 중에 4명과 현역 의원이 아닌 3명, 합하여 14명을 선출함.

9) [N.Y. Legis. Law § 83-m] (검색일 2016. 2. 28.)

10) [2011 R.I. Laws ch. 106, § 1; 2011 R.I. Laws ch. 100, § 1] http://webserver.rilin.state.ri.us/PublicLaws/law11/law11100.htm (검색일 2016. 2. 27.)

· 양원의 각 소수당 대표가 각 2명씩 현역 의원 중에 선출함.

○ 대체위원회

- 텍사스[11)]

· 기한 내에 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5명으로 이루어 진 대체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함.

· 부지사, 주 하원 의장, 주 법무부 장관, 주 회계 담당자, 국유지 관리국 위원이 대체위원회 위원이 됨.

- 코네티컷[12)]

· 의회에서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대체위원회를 구성함.

· 양원 네 명의 대표가 두 명씩 선출함.

· 선출된 8명의 위원이 주 유권자 자격이 있는 자 중에 9명을 선출하여 총 17명의 대체위원회가 구성됨.

· 대체위원회에서도 확정하지 못하면 주 대법원이 결정됨.

○ 정치위원회

- 뉴저지[13)]

· 연방선거 획정 위원회와 주선거 획정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

· 연방선거 획정위원회는 4명의 의회 대표가 12명을 임명하고, 임명된 12명이 1명을 선출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함.

· 12명의 위원이 1명을 선택하지 못하면 두 명의 후보를 주

11) [Tex. Const. art. III, § 28]
http://www.statutes.legis.state.tx.us/Docs/CN/htm/CN.3.htm (검색일 2016. 2. 27.)

12) [Conn. Const. art. XXVI(b)]
http://www.ct.gov/sots/cwp/view.asp?A=3188&Q=392288 (검색일 2016. 2. 27.)

13) [N.J. Const. art. II, § II], [N.J. Const. art. II, § II, ¶ 7]
http://lis.njleg.state.nj.us/cgi-bin/om_isapi.dll?clientID=69297242&infobase=njconst.nfo&record={8}&softpage=Doc_Frame_PG42 (검색일 2016. 2. 27.)

대법원으로 이송하여 대법원이 결정함.

· 13명의 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지 못하면 대법원이 두 개의 안 중에 하나를 결정함.

· 주선거 획정위원회는 10명 또는 11명으로 구성함.

·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가 각각 5명을 임명함.

· 10명의 위원이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주 대법원이 11번째 위원을 임명하여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게 함.

- 콜로라도[14)]

· 연방 의회 선거구는 일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획정되며 주지사의 거부권 인정함.

· 주 의회 선거구는 11명의 정치위원회가 획정함.

· 4명의 의회 대표가 1명씩 임명, 주지사가 3명, 주 대법원장이 4명을 임명함.

· 현역 의원이 4명을 넘지 않고, 7명 이상 같은 당원이 아니고, 5명 이상이 같은 상원 선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각 상원 선거구 거주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함.

· 정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은 주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함.

○ 독립위원회

- 캘리포니아 [15)]

·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은 최근 10년 간 연방 정부나

14) [Colo. Const. art. V, § 48]
http://www.colorado.gov/cs/Satellite/CGA-ReDistrict/CBON/1251581558936 (검색일 2016. 2. 27.)

15) [Cal. Gov't Code § 8252(b)-(g)],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gov&group=08001-09000&file=8251-8253.6 (검색일 2016. 2. 27.)

주 정부에서 일 한 적이 없어야 함.

· 로비스트, 특정 후보에 후원금 2000$ 이상 제공한 자, 중앙당 위원 등이었던 자도 위원이 될 수 없음.

· 미국 감사원 위원 세 명이 민주당원 20명, 공화당원 20명, 공천이나 위원회와 무관한 자 20명을 선택함.

· 상원 다수당 대표, 상원 소수당 대표, 하원 다수당 대표, 하원 소수당 대표가 각각 2명씩 선출함(민주 3명, 공화 3명, 기타 2명).

· 선출된 8명의 위원들이 6명을 더 선출(민주 2명, 공화 2명, 기타2명)하여 총 14명으로 구성함.

- 애리조나[16)]

· 위원 임명 이전 3년 간 로비스트, 당원, 공무원, 후보 운동 참여자가 아닌 자 중에 임명함.

· 주 항소법원에서 공화당원 10명, 민주당원 10명, 기타 5명을 지명함.

· 상원 다수당 대표, 상원 소수당 대표, 하원 다수당 대표, 하원 소수당 대표가 1명씩 선출함.

· 4명의 위원이 1명을 선출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함.

다. 선거구 획정 절차[17)]

1) 선거구 획정 절차

○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연방정부의 상무부 소속의 인구조사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함.

16) [Ariz. Const. art. IV, pt. 2, § 1(3)-(8)] http://www.azleg.gov/FormatDocument.asp?inDoc=/const/4/1.p2.htm (검색일 2016. 2. 27.)

17) 전미주의회의회 http://www.ncsl.org/ (검색일 2016. 2. 27.)

- 인구조사국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각 주의 인구변동과 의석 재배정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연방의회 개회 후 1주일 이내에 하원 사무처장에게 통보함.
- 사무처장은 15일 이내에 각 주의 주지사에게 알려야 함.
- 주 의회 내 위원회 또는 독립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청문회를 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안을 작성함.
- 작성된 원안은 상원과 하원의 심의를 거쳐 주의회를 통과함.
- 주의회를 통과한 원안은 주지사에게 송부되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됨.
- 50개 주 중에서 16개 주에서는 주지사의 서명으로 원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무성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함.
- 연방법무성의 심사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주들은 과거에 소수인종에 대한 정치적 차별 등이 심각하여 그러한 문제를 연방 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함임.[18)]
-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의 승인을 받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주민투표나 집행정지신청을 인정함. 연방법무부는 각 주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상원과 하원이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도 연방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음.[19)]

18) Voting Rights Act of 1965 5조
https://www.justice.gov/crt/about-section-5-voting-rights-act (검색일 2016. 2. 27.)

19) 미국의 선거구 획정과 의회 경쟁력의 관계, 임재주, 2012,
http://azine.kr/m/assembly/list_view2.html?m_code=4106&m_code2=&code=5558 (검색일 2016. 3. 1.)

2) 선거구 획정 기한

○ 선거구 획정 기한은 주 별로 명시 여부가 다름.

○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일정은 다름.

○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선거일이나 후보자등록일 또는 의회 회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간접적인 획정 기한을 지키고 있음.

라. 미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

1) 연방 헌법(the U.S. Constitution)과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

○ 연방 헌법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선거구 간 인구 동등성과 인종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the Apportionment Clause of Article I, Section 2, of the U.S. Constitution은 연방 상원 선거구 간 인구는 거의 같아야 한다고 규정함.

○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은 연방 하원 선거구 간 인구는 거의 같아야 한다고 규정함.

○ Section 2 of the Voting Rights Act of 1965는 의도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선거구 획정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2) 각 주 헌법

○ 각 주에서는 연방헌법에서 규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체 법령에서 여러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대체로 밀집성(Compactness), 인접성(Contiguity), 정치적 동질성 유지

(political subdivisions), 구성원 간 공통이익의 존재(Communities of Interest)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예시

- 콜로라도 주 헌법은 연방선거와 주선거에서 4가지 기준을 모두 규정함.[20)]
- 일리노이 주는 주 의회 선거에서는 조밀성과 인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21)]
- 3켄터키 주는 주 의회 선거에서 조밀성과 정치적 동질성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선거에서는 인접성, 정치적 동질성 유지, 공통 이익 존재할 것을 규정함.[22)]

3) 연방 하원 의석 배분 기준

○ 10년 마다 인구조사를 통해 각 주에 연방 하원 의원 의석수를 배정함에 있어 '인구수'와 '인구변화'가 중요한 기준이 됨.

○ 2000년 인구조사에서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주는 10년 전 조사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여 2명의 하원의원을 더 배정받았고 뉴욕 주는 인구가 감소하여 2명의 하원의원 의석이 감소함. 코네티컷과 미시건 주는 인구가 약간 감소하여 하원의원 의석수가 1명씩 각각 감소함.

○ 하원은 일정 구역의 인구수가 다른 구역에 비해 많거나 적으면 행정구역상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할 정도로 동등인구수를 중시. 뉴저지 주는 약 20,000㎢에 약 800만 명이

20) 콜로라도 법정보 사이트 http://www.lexisnexis.com/hottopics/colorado/ Colo. Const. Art. V, §§ 47 (검색일 2016. 2. 27.)

21) 일리노이 주정부 사이트 http://www.ilga.gov/commission/lrb/con4.htm Ill. Const. Art. IV, § 3 (검색일 2016. 2. 27.)

22) 캔터키 의회 사이트 http://www.lrc.state.ky.us/legresou/constitu/033.htm Ky. Const. § 33, (검색일 2016. 2. 27.)

거주하면서 12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 몬타나 주는 약 380,000㎢에 약 83만 명이 거주하면서 1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 지역대표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몬타나 주에 비해 뉴저지 주가 과다대표된 것임.

○ 같은 수의 하원 의석을 할당받은 주끼리도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기도 함. 2000년의 인구조사 결과, 와이오밍 주는 약 50만 명이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몬타나 주는 약 90만 명이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함.

○ 하원의 경우, 각 주에서 최소한 한 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435개의 의석수 중 50개 주에 1석씩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385개의 의석을 균등비례방식으로 인구수에 맞게 의석이 자동으로 배분함. 그 결과 2개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주는 주 내에서 의석수만큼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함. 2010년 인구조사의 결과 각 주 별로 배분된 의석수 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3.] 각 주 연방 의회 의석 수 할당 현황[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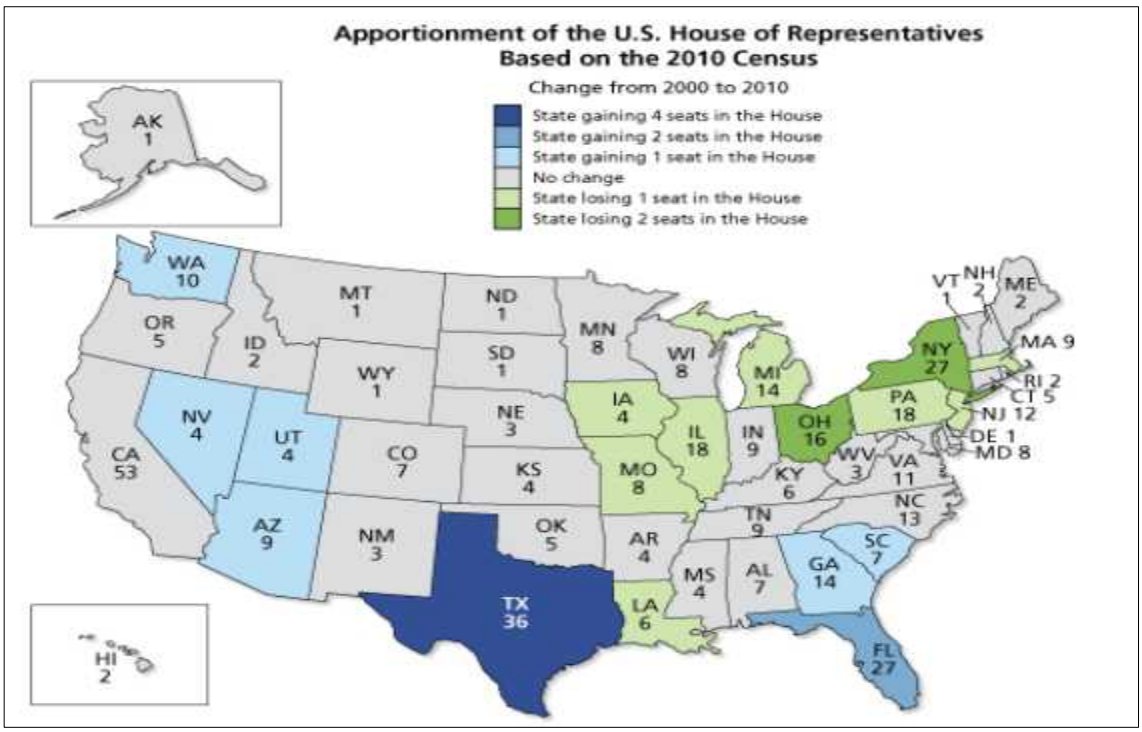

23) 미인구조사국 https://www.census.gov/history/www/reference/apportionment/ (검색일 2016. 2. 27.)

마. 선거구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1) Baker v. Carr (1962년)[24]

- ❍ 테네시 주 의회가 1901년 이후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테네시 주민 Baker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 ❍ 이에 대해 테네시 주 법원은 선거구 획정이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각함.
- ❍ 연방 대법원은 선거구 획정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한 보호" 조항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 판결은 연방선거에 관한 주 의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이 연방 법원에 의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한 최초의 판결

2) Gaffney v. Cummings (1973)[25]

- ❍ 주 의회 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연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비해 완화된 인구동등성을 요구한다고 판결한 사건
- ❍ 주 상원 선거에서 1.81%의 인구편차가 나타나고, 주 하원 선거구에서 7.83%의 인구편차를 나타났으나, 연방대법원은 주 의회 선거구 획정시에는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만큼 엄격한 인구동등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결
- ❍ 이 판결 이후 주 의회 선거구 획정은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보다 유연성을 확보하게 됨.

24) 선거구획정전사이트 http://www.redistrictinginamerica.org/baker/ (검색일 2016. 3. 5.)

25) 법정보사이트 http://caselaw.findlaw.com/us-supreme-court/412/772.html (검색일 2016. 3. 5.)

3) White v. Weiser (1973년)[26]

- ❍ 연방선거에서 같은 주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1.1 : 1을 초과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주 간 선거구 인구편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 ❍ 이 판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인구동등성에 기반한 표의 등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대표성 또는 선거구의 동질성, 조밀성 등의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 점임.
- ❍ 당시 연방대법원은 인구편차 0.745%인 A안을 위헌 판정한 후에 인구편차 0.149%인 B안보다 인구편차 0.284%인 C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C안이 조밀성과 연속성을 갖는 선거구 획정안이었기 때문임.

4) Karcher V. Dagget (1983년)[27]

- ❍ 연방선거의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매우 엄격했음. 1980년 뉴저지에서 14개의 하원 의석을 배정받은 후 최대인구는 527,472명, 그리고 최소 선거구의 인구수는 523,798명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 0.6984%) 연방대법원은 뉴저지의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이라고 판시함.
- ❍ 이 판결 이후로 대부분의 주에서 인구편차를 0.5%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 뉴욕 주는 2004년 연방 하원 선거에서 29개의 의석을 받아 29개의

26) 미국대법원판례정보사이트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12/783/ (검색일 2016. 3. 5.)

27) 미국대법원판례사이트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62/725/ (검색일 2016. 3. 5.)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는데, 최대선거구의 인구를 654,361명, 최소선거구의 인구를 654,360명으로 1명 차이만 나게 획정함.

- 캘리포니아 역시 53개의 선거구에서 최대선거구의 인구를 639,088명, 최소선거구의 인구를 639,087명으로 설정함.

5) Ala. Legis. Black Caucus v. Alabama(2012~2015)[28]

- 인종차별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제시한 판례
- 2011년에 앨라바마 주 연방 상원 선거구 획정안이 주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2012년에 Ala, Legis, Black Caucus라는 시민들이 제소함.
- 대법원은 2015년에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다시 획정안을 구성하여 논의가 진행 중임.

6) Wilson v. Oklahoma(2011)[29]

- 오클라호마 주 상원 선거구 획정이 조밀성과 정치적 동질성을 유지하지 않도록 이루어졌다고 법원에 제소한 사건
- 대법원은 의회가 조밀성과 정치적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할 의무는 실현 가능한 한에서 그 의무를 지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엄격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선거구 획정이 곧바로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함.
- 이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서 인구동등성과 인종차별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음.

28) http://redistricting.lls.edu/cases.php#11th 11th Circuit (검색일 2016. 3. 5.)

29) http://redistricting.lls.edu/cases.php#10th 10th Circuit (검색일 2016. 3. 5.)

마. 미국 선거구 관련 주요 논의

1) 게리맨더링 조정 논의

○ 미국의 각 주 의회별로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그들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매 기간마다 각 주의 과반 확보 당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를 유지하는 한에서 게리맨더링 전략을 쓰기 때문임.[30]

<노스캐롤라이나 주 12선거구>

<일리노이주 4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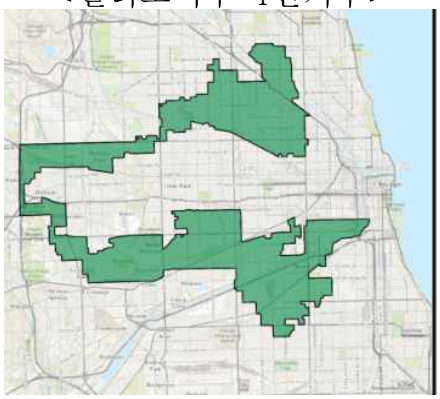

<텍사스 주 14선거구>

<루이지애나 주 6선거구>

30) 그림은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참고함
http://nationalmap.gov/small_scale/printable/congress.html#list (검색일 2016. 3. 5.)

○ 2000년에 애리조나 주에서는 초당파적인 독립 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됨.

○ 주 의회를 계속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주 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2015년 6월에 합헌 판결함.

○ 이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서는 게리맨더링 관행이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캘리포니아 주도 2010년 선거구획정 권한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의 주민발의를 통과시켰는데, 이번 판결로 정당화될 것으로 보임.[31)]

2) 주민 소송 가능성 확대

○ 2015년 아이다호에서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함.[32)]

3) 공청회 등 의견 청취 확대

○ 오리건 주는 최소한 각 상원 선거구 내에서 1회 이상의 공청회를 거치되, 총 10회 이상의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선거구 획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중임.[33)]

---

31) 연합뉴스, 2015. 6. 30. 미 대법원, 공화 주도 애리조나주 '게리맨더링' 제동,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30/0200000000AKR20150630003200071.HTML (검색일 2016. 3. 6.)

32) 전미주의회의회http://www.ncsl.org/research/redistricting/2015-redistricting-legislation.aspx아이다호 주정부 https://legislature.idaho.gov/legislation/2015/S1091.pdf (검색일 2016. 3. 5.)

33) 전미주의회의회http://www.ncsl.org/research/redistricting/2015-redistricting-legislation.aspx 오래곤 주정부 http://sos.oregon.gov/elections/Documents/2015_Synopsis.pdf(검색일 2016. 3. 5.)

영 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가. 선거구획정 주체

1)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영국 선거구획정위원회(Boundary Commission: 이하 획정위원회)는 독립성·비정치성·비당파성을 지향하는 자문기관으로,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임.

- 획정위원회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획정위원회로 구성됨.
- 잉글랜드 및 웨일즈 획정위원회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지원으로 운영되며,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획정위원회는 각 단위정부 지원으로 운영됨.

❍ 현재의 획정위원회는 「의회선거구법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Schedule 1에 따라 구성되며, 동 법은 획정위의 안(案)에 위임입법(delegated legislation)의 자격을 부여함.[34]

- 「하원법 (House of Commons (Redistribution of Seats) Act 1944)」은 획정위원회 전신인 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동 법은 당시 획정위원회에 '비정상적으로 큰(abnormally large)' 지역구에 대한 특별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34) Elise Uberoi and Isobel White (9 December 2015) 'Constituency boundary reviews and the number of MPs',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o. 5929, p. 15.

○ 지역별 획정위원회는 의장 및 부의장, 위원, 평가단(기술 자문), 보조위원, 사무국 등으로 각각 구성됨.

2)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직무 및 임명절차

○ 획정위원회 의장은 당연직(The ex officio Chairman)으로 4개 지역을 모두 관장하며, 하원의회 의장이 역임함.[35)]

-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실무 절차에 관여하지 않음.

○ 획정위원회 부의장은 반드시 고등법원 판사(High Court judges)가 역임해야 함.

- 잉글랜드 및 웨일즈 획정위원회 부의장은 상원의장(Lord Chancellor)이 임명하며, 스코틀랜드는 최고법원장(Lord President of the Court of Session)이, 북아일랜드는 수석재판관(Lord Chief Justice of Northern Ireland)이 각각 임명함.
- 부의장은 획정위원회의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실무를 관장함.

○ 기타 획정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공직임용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관계부처 장관이 임명함.

- 획정위원회 위원들은 시간제(part-time) 임명직 위원으로, 선거구 획정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36)]
- 스코틀랜드 획정위원회의 경우 전국지(紙)를 통해 궐원(闕員)을 공지하고, 획정위원회부의장·스코틀랜드정부대표·공직임명위원 대표 등이 참석하는 인터뷰를 거친 후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이 최종 임명.[37)]

35) 2016년 3월 현재 하원의장은 John Bercow임 (2009년 6월 선출).

36)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Annual Report 2014/2015, p. 2.

○ 국토지리정보원(Ordnance Survey) 및 통계국(Statistics Authority) 단체장은 획정위원회 법적평가사 자격으로 부의장의 요청 하에 기술자문의 역할을 담당함.

○ 본격적인 선거구 검토시기에 접어들 경우 획정위원회는 획정위원들을 보조할 위원들(assistance commissioners)을 각 지역 국무장관의 임명 하에 선발할 수 있음.

- 보조위원들은 획정위원회의 법적의무사항인 공청회를 진행함. 더불어 협의기간 획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접수된 제반 진정(陳情)을 검토·평가하고, 획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함.

○ 획정위원회는 이밖에 소규모 사무국(Secretariat)을 설립해 선거구 획정 검토 및 실행에 따르는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음.

3)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및 직무

○ 선거구 경계는 각각의 하원의원들이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에서 대략 일정한 숫자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 검토 과정(Periodic Review)을 거쳐야 함.

○ 해당 검토 과정은 획정위원회가 전담하며, 각 지역 획정위원회는 법률로 명시된 선거구획정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은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를 설립하고, 5차 정기검토(2007년 마감)가 끝나는 대로 선거구획정 권한을 획정위에서 선관위로 이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공공성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 CSPL)는

37) http://www.bcomm-scotland.independent.gov.uk/commission/ (검색일 2016. 3. 3.)

2007년 1월 소관 업무 권한을 획정위원회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당시 노동당 정부는 공공성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지역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구획정 권한 조항을 폐지함.[38)]

○ 의회 선거구에 관한 획정위원회의 안을 전달받은 정부는 해당 안을 검토 후 칙령(Order in Council) 초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함.

- 획정위원회가 독립적·비당파적 방법으로 선거구획정 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파급효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39)]
- 획정위원회의 제출안이 법률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가 사실상의 거부권(veto)을 지니고 있는 것임. 이는 획정위원회의 지난 2013년 정기 검토가 중단된 근본 원인임.[40)]

나. 선거구획정 원칙

1) 관계규정

○ 획정위원회의 권원(權原)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선거구법 1986)」에 있으며, 동 법은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Act 2011)」에 의해 일부 개정되어 현재의 획정위원회 권한을 구성함.

38) Uberoi and White, pp. 15-16.

39) 강휘원,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 운영, 개혁방향', 한국정치학회보, 36(4), p. 350.

40) Ron Johnston, David Rossiter and Charles Pattie (July 2014) Equality, community and continuity: reviewing the UK Rules for constituency redistributions, McDougall Trust, p. 2.

- 스코틀랜드 획정위원회는 「스코틀랜드법 (Scotland Act 1998)」에 따라 웨스트민스터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구 검토를 병행함.

○ 기존의 하원의회는 정확한 동등 인구수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나,[41]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2011」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동등성 원칙을 강조함.[42]

○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선거구획정의 가장 주요한 원칙임.[43]

○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2011 (Section 11)」은 선거구획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석수는 600석으로 함.
- 5% 규정(The 5% rule): 각 선거구당 유권자수는 할당된 유권자수(electoral quota)의 95%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할 수 없음.[44]
- 5% 규정 적용 예외 지역으로는 △4개 보호구역(protected constituencies) △12,000km2 이상의 면적을 지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해당 룰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선거구 등이 있음.
- 각 선거구는 반드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어느 한 지역에 속해야 함.
- 하나의 선거구는 13,000km2 이상의 면적을 지닐 수 없음.

41) 강휘원, p. 350.

42) Johnston, Rossiter and Pattie, p. 5.

43) Triennial review report: Boundary Commissions for England, Northern Ireland, Scotland and Wales: reviewing the function, form and governance of the Boundary Commissions (March 2015), p. 8;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7988/Boundary_Commission_Triennial_Review_26_March_2015.pdf (검색일 2016. 3. 2.)

44) 할당된 유권자수는 전체 유권자수를 596석(전체 600석 중 4개의 예외 선거구를 제외한 숫자)으로 나눈 숫자를 의미한다. 오는 2020년 영국 전역에서 치러질 총선에 할당된 유권자수는 74,769.2명이며, 따라서 각 선거구 유권자수는 5% 규정을 적용, 71,031명 이상 또는 78,507명 이하로 제한된다. http://www.bcomm-scotland.independent.gov.uk/2018_westminster/index.asp (검색일 2016. 3. 8.)

2) 주기 및 법정기한

❍ 2010~2015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출범 당시 의석수를 600석까지 줄이고, 선거구 당 유권자수를 75,000명 수준으로 묶는 등 선거구 간 동등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구획정 관련 검토횟수를 좀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음.[45]

❍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2011」은 전(全)선거구 획정을 위한 검토를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설정함. 한편 「의회 고정임기법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통과로 인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의회의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됨에 따라, 선거구획정은 사실상 매 회기 1~3년차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오는 2020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획정은 2016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획정위원회는 2018년 9월까지 검토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46]

- 앞서「획정위원회법 (Boundary Commissions Act 1992)」은 선거구획정 검토기한을 8~12년으로 규정한 바 있음.
- 「하원법 (의석재분배법) 1944」에 따른 상설위원회 설립 이후 선거구획정에 관한 최초 검토(Initial Review)가 이뤄졌으며, 1954년과 1969년에 각각 1차·2차 검토(First and Second Periodical Review) 결과가 제시됨. 이후 다소 간의 용어조정 (Periodical Review→Periodic review) 등을 거쳐, 1995년과 2007년에 각각 4·5차 검토 결과에 따른 선거구 조정안이 제시됨.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2011」에 따라 2011년 3월 시작된 6차

45) Isobel White and Oonagh Gay (28 July 2010) 'Reducing the size of the House of Commons',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o. 5570, p. 11.

46) http://boundarycommissionforengland.independent.gov.uk/2018-review/ (검색일 2016. 3. 8.)

검토는 의회가 「선거등록 및 관리법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을 통과시키며 당해 검토 만료 기한을 오는 2018년 9월로 설정함으로 인해 지난 2013년 1월 중단된 바 있음.

[참고조문]

「의회선거구법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제2조 선거구획정위원회

(1) 의회선거에 있어 의석분배 검토의 연속성을 위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4개의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 동 법의 부록 제1조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제반 관련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중략)

부록 제1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제1항 하원의장은 4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제2항 각각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관계 장관의 임명을 받은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Section 2 The Boundary Commissions

(1) For the purpose of the continuous review of the distribution of seats at parliamentary elections, there shall continue to be four permanent Boundary Commissions, namely a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a Boundary Commission for Scotland, a Boundary Commission for Wales and a Boundary Commission for Northern Ireland.

(2) Schedule 1 to this Act shall have effect with respect to the constitution of,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Boundary Commissions.

(중략)

SCHEDULE 1 THE BOUNDARY COMMISSIONS

Constitution

1. The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shall be the chairman of each of the four Commissions.

2. Each of the four Commissions shall consist of the chairman, a deputy chairman and two other members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Act 2011)」

제11조 의석수 및 의석수 분배

(1) 1986년 의회선거구법은 부록 제2조는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록 제2조 의석분배규칙

선거구 수

1. 영국 선거구 숫자는 600석으로 한다.

선거구 당 유권자

2. (1) 모든 선거구 당 유권자 수는—

(a) 영국 할당 유권자의 95% 미만인 경우, 혹은

(b) 해당 할당량의 1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1. Number and distribution of seats

(1) For Schedule 2 to the 1986 Act there is substituted—

SCHEDULE 2 RULES FOR THE DISTRIBUTION OF SEATS

Number of constituencies

1. The number of constituencies in the United Kingdom shall be 600.

Electorate per constituency

2. (1) The electorate of any constituency shall be—

(a) no less than 95% of the United Kingdom electoral quota, and

(b) no more than 105% of that quota.

다. 선거구획정 절차

○ 선거구획정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뉨.[47]

- 획정위원회의 검토 초안 발표: 획정위원회는 검토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함. 12주간 진행되는 최초 협의(initial consultation period) 기간 관계당사자들로부터 불만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47) Uberoi and White, pp. 5-7.

서면으로 수령해야 함. 최초 협의 기간 획정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서면 의견서 외에 구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획정위원회는 최초 협의 기간이 끝난 뒤 수령한 의견서 및 공청회 기록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함. 이후 4주에 걸친 2차 협의 기간 (secondary consultation period)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두 차례의 협의 기간이 끝나고 획정위원회는 위원회 재량 하에 최초 검토결과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음. 수정된 보고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어 8주간의 공공협의를 추가로 거칠 수 있음. 해당 기간 공청회는 열지 않음.
- 획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매 5년째 되는 10월 1일 이전에 반드시 관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차기 제출연도는 2018년). 만일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검토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하원의장에 제출해야 함. 동 보고서는 의회에 상정됨.

❍ 2020년 총선 대비 선거구획정 예상 절차는 <표 1>과 같음.

기간	주요절차
2016년 2월말	선거구 검토작업 개시
2016년 9월	검토결과 초안 발표; 이후 최초 협의 (12주)
2017년 3월~5월	2차 협의 (4주)
2017년 9월	검토결과 수정안 발표; 이후 추가 협의 (8주)
2018년 10월1일	최종 검토결과 제출마감

<표 1> 2018년 획정위원회 선거구 검토 예상절차[48)]

48) ibid., p. 11.

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 Harpe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1954)[49]

- H는 획정위원회가 지방정부의 경계문제를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인구편차에만 집중해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획정위원회가 「하원법 (의석재분배법) (House of Commons (Redistribution of Seats) Act 1949)」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가처분명령을 받아냄. 영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H에 대해 획정위원회의 보고서가 해당 기관 고유의 권한에 의한 결과물임을 부정할 수 있는 명쾌한 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또한 「국왕소추법 (Crown Proceedings Act 1947)」에 의거, 법원은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판시함.

○ R. v Boundary Commission for England Ex p. Gateshead BC / Ex p. Foot (1983)[50]

- the Foot application: 노동당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보고서가 「하원법 1949」가 규정한 선거구 간 인구편차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하고, 균등한 유권자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함.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하원법 1949」가 선거구 검토를 획정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획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획정위원회가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일일이 해명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또한 원고가 검토 보고서에 드러난 획정위원회의 결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소를 기각함.

49) http://legalresearch.westlaw.co.uk/ (검색일 2016. 3. 8.)

50) http://legalresearch.westlaw.co.uk/ (검색일 2016. 3. 2.)

- the Gateshead application: 3곳의 지방정부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임. 고등법원은 이 역시 선거구 간 균등성이 선거구획정 원칙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소를 기각함.

○ Gallie v Boundary Commission for Scotland (1994)[51]

- G는 스코틀랜드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시 하부행정단위인 지역 wards 구분을 명시한 「의회선거구법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을 준수하지 않고, 획정위원회만의 기준으로 보고서를 결론지어 보다 균등한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획정 기회를 박탈해 지역사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함. 스코틀랜드 항소법원 외원(Court of Session; Outer House)은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전국에 걸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협의를 통해 지방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획정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일부 지역의 유대관계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상회한다는 결론 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함. 법원은 또 획정위원회의 당해 결정 자체가 획정위원회에 주어진 재량권이라는 점을 명시함.

○ 상기 판례에 비추어, 영국 법원은 획정위원회의 결론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최대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검토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사안에 사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51) http://legalresearch.westlaw.co.uk/ (검색일 2016. 3. 2.)

마. 기타 관련 입법동향 및 주요이슈

○ 영국 정부는 2016년 3월 현재 선거구획정 검토업무와 관련해 주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입법계획은 없다고 밝힘.[52)]

○ 가장 최근의 선거구획정 자료인 2007년의 5차 검토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의 선거등록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재의 인구변화 및 유권자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구 개혁의 시급성을 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53)]

○ 선거구획정 개혁안의 당면과제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 등에 따라 하원의원 간 업무 불균등성이 발생하고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54)]

- 최근 McDougall Trust의 분석에 의하면 +/- 5% 규칙을 적용해 선거구획정을 시도한 결과 533개의 잉글랜드 선거구 가운데 현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선거구는 7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이 파급효과를 일으켜 각 선거구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임.

- McDougall Trust는 동 보고서에서 +/- 5% 규칙을 +/- 8% 또는 +/- 10%로 완화할 경우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줄이고, 선거구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함. 더불어 선거구획정 측면에서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2011」에 따른 의석수 감소(650석→600석)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함.[55)]

---

52) Government response to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s Eighth Report of Session 2014-2015: what next on the redrawing of parliamentary constituency boundaries? (February 2016), Cm 9203, p. 16.

53) 획정위원회의 5차 검토 보고서(2007년)는 2000년(잉글랜드), 2001년(스코틀랜드), 2002년(웨일즈), 2003년(북아일랜드)의 선거등록유권자를 기준으로 각각 작성됐다.

54) Uberoi and White, pp. 20-23.

○ 선거구획정 관련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획정검토에 있어서의 근거자료임. 현재까지 선거인명부(electoral register)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이 이뤄져 왔으나, 모든 유권자가 선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는 지역의 인구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56]

- 정치평론가 Lewis Baston은 하원의원이 대표하는 사람은 등록선거인뿐만 아니라 선거구 내 거주하는 모든 유권자이므로 선거구획정 시 선거인명부 대신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선관위 역시 등록선거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거참여 정도가 낮은 특정 유권자 그룹(청년층 등)이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
-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선거인명부가 매년 갱신되며, 전체 인구를 기반으로 할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도 포함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거인명부를 선거구획정의 주요 자료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임.[57]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58]

가. 비례대표 실시현황[59]

○ 선호투표제(Alternative Vote): 하원 내 위원회 의장 및 상원의장

55) 영국 보수당 정부는 이에 대해 의석수 감소는 정치적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총선 공약사항이고, 「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2011」 제정 당시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된 이후 결정된 것으로 해당 사안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Government response to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February 2016), p. 11.

56) Uberoi and White, pp. 23-24.

57) Government response to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pp. 11-12.

58) 영국 하원은 소선거구제(First-past-the-post)를 고수하고 있는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내 일부 비례대표 선거 사례 및 비례대표제 채택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개괄한다.

59) http://www.parliament.uk/about/how/elections-and-voting/voting-systems/ (검색일 2016. 3. 9.)

선출, 상원 세습귀족(hereditary peers) 재·보궐 선거 등에서 사용함. 투표자들은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들의 이름 옆에 1, 2, 3 등의 숫자를 기입해 선호도를 표시함. 투표자들은 좋아하는 만큼 숫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것도 가능함. 개표에서 과반수이상 1순위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가장 적게 1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가 탈락하고, 탈락 후보자의 2순위 득표를 남은 후보자들에게 분배함.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를 합한 것보다 많을 경우 당선이 확정되고, 해당 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일 과정을 반복

- 보완투표제(Supplementary Vote): 런던시장 및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의 시장 선출 방식으로 활용됨. 선호투표제와 유사하지만 유권자들은 두 명의 선호후보까지만 표기할 수 있으며,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것도 가능함.
-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 하원 부의장단, 북아일랜드 의회,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유럽의회의원 선거 등에 사용됨. 중·대선거구에 적합하며, 선호투표제와 개표방식이 유사하나, 특정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를 얻어 가장 먼저 선출되면 당선 후보의 잉여 득표를 투표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남은 후보들에게 전가하는 방식. 최소 득표 기준을 달성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장 적게 1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자의 2순위 득표를 남은 후보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반복함.
- 추가의석제(Additional Member System):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및 런던 의회에서 사용함. 유권자들은 개인 후보자 1인, 정당

1곳에 각각 투표할 수 있음. 개별 후보는 소선거구제(first-past-the-post) 방식으로 선출되며, 정당이 받은 득표수만큼 해당 정당에 더 많은 의석을 배분함. 웨일즈 의회의 경우 40개의 지역구 선거구 의석 외에 20개의 정당명부식 추가의석이 존재함.[60]

○ 폐쇄형 정당명부제(Closed Party List):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의 유럽의회의원 선거에서 활용됨.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정당 옆에 'X'표시를 함. 각 정당은 득표한 비율만큼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확보함.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므로 후보자 명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정당임.

나. 기타 관련 주요이슈

○ 지난 2015년 5월 치러진 총선은 전후 영국 역사상 가장 불(不)비례한 선거 중 하나로 기록됨. 전문가들은 당해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 데이비드 캐머런이 수상이 되는 것은 바꿀 수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61]

- 2015년 총선에서 영국독립당(UKIP)은 390만 표, 녹색당(Green Party)은 120만 표를 각각 획득했으나 하원에서 1석씩 얻는데 그침. 일례로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동트식을 채택했을 경우 두 정당은 각각 80석, 20석을 확보할 수 있었음 (<그림 1> 참조).[62]

60) The Electoral Commission, Media Handbook: National Assembly for Wales and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elections Thursday 5 May 2016 (March 2016), p. 37.

61) Andrew Geddes and Jonathan Tonge (eds), Britain Votes 201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38.

62) BBC, 'Election 2015: What difference woul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ve made?' (9 May 2015); http://www.bbc.co.uk/news/election-2015-32601281 (검색일 2016.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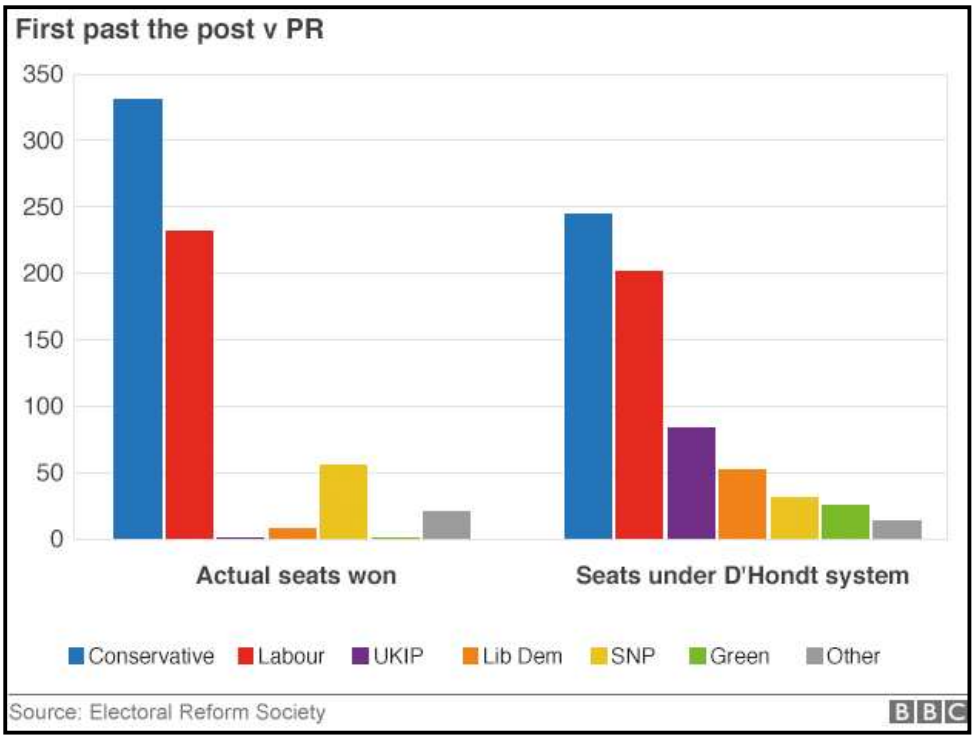

<그림 1> 2015 총선 정당별 의석수(좌) 및 동트식 예상 의석수

○ 정치운동 단체인 선거개혁모임(Electoral Reform Society)은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영국 선거제도를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군소정당의 대표들과 연대해 총리실에 탄원서를 제출함.[63]

- 탄원서에는 현재 영국 제3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을 비롯해 자유민주당, 녹색당, UKIP, Plaid Cymru, British Public 등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14만 명이 동참

- 해당 정당 대표들은 동 탄원서에서'유권자들이 투표한 방식에 부합하는 의석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비례적인 투표제도를 원한다'며, '2015년 총선은 (각 정당의) 의석분포가 득표율과 맞지 않는 마지막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함.

63) http://action.makeseatsmatchvotes.org/ea-action/action?ea.client.id=1754&ea.campaign.id=38262&ea.tracking.id=email (검색일 2016. 3 .9.)

일 본

일본 연구관 : 송재현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가. 선거구획정 주체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衆議院議員選擧區畫定審議會設置法)」에 의거하여 내각부내에 선거구획정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1조).
- 참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가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심의회는 없음. 각 선거구의 정수는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에 의거함.

1)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 해당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6조).
- 위원의 임기는 5년(「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6조 5항). 다만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임.
- 심의회의 회장은 위원들의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됨(「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7조).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위원 명부(2016년 3월 현재)

이 름	직 업	비 고
오오야마 레이코(大山礼子)	코마자와대학 교수	
카와토 사다후미(川人貞史)	동경대학 교수	
쿠보 노부야스(久保信保)	자지체위성통신기구 이사장	회장대리
코바야카와 미츠오(小早川光郎)	세이케이대학 교수	회장
스미타 히로코(住田裕子)	변호사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대학 교수	
미야자키 미도리(宮崎緑)	치바상과대학 교수	

2)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 위원은 견식이 높은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으로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구 개정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로,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6조 제 2항).
-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시 국회가 폐회 혹은 해산으로 인해 양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위의 항목을 충족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6조 제 3항).
- 다만, 이같은 경우라도 임명 후의 첫 국회에서 양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그 위원을 파면하여야 함(「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6조 제 4항).

3)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및 직무

❍ 심의회는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구 개정에 관하여 조사 및 심의를 하며,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개정안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함(「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2조).

나. 선거구획정 원칙

1) 관계규정

❍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같은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에 의거함.

❍ 선거구 획정에 관한 원칙은 이하와 같음(「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3조).

- 각 선거구의 인구가 최대한 균형을 이룰 것
-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편차가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함.
- 행정구역, 지형,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함.

2) 선거구 획정의 주기 및 법정기한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는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인구가 처음으로 관보에 공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해야함(「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4조).

❍ 단, 각 선거구에 현저한 인구 불균형이나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선거구에 관한 권고가 가능함(「중의원 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 제 4조 제 2항).

❍ 결론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주기는 10년이며, 1년의 법정기한을 가지나 예외적으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고가 가능함.

다. 선거구획정 절차

❍ 선거구획정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 국회 심의, 공직선거법 개정의 순서로 이루어짐.

-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64]를 한 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달될 경우 개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하여 총리대신에게 권고함.
-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상기한 국세조사의 결과가 발표된 후 1년 이내에 총리대신에게 개정안을 권고해야하며,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통상국회 내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하여야 함.
- 이에 따른 소요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상국회일정내일 경우가 많지만 각 정당간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한 있음.
- 최근의 중의원 선거구 개정은 2013년 개정안이며, 이 경우에는 3월 28일에 선거구 획정 심의회의 권고가 있었으며 6월 28일에 개정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64) 개정안 작성은 기본적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10년에 한 번이지만, 심의회 자체는 년 수회 열림. 현 중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심의회는 2014년 4월 발족하였으며 현재까지 년 2회 가량 심의회가 개회되었음(2014년 4월, 7월, 2015년 2월, 7월, 2016년 1월, 2월).

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 2009년 이전까지는 심각한 인구 편차에 한해서 위헌 내지는 위헌 상태 판결을 하였으며, 그 기준은 중의원 3배, 참의원 6배

❍ 중의원 판례는 1976년 4월 14일 최고재판소 판결[65]에 의거함.

- 당시 5배에 달한 인구편차는 헌법 14조(법 아래의 평등) 및 44조(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에 반하므로 위헌 판결. 다만 선거 자체는 유효
- 이 판결후의 선거인 제 34회 중의원의원 총선거(1976년 12월 5일)에서는 정수가 20석 추가됨으로써 다소 편차가 완화되었음.

❍ 참의원의 경우 1983년 4월 27일 최고재판소 판결[66]에 의거함.

- 위의 판결과 다르게 이 선거무효소송은 기각되었음.
- 재판의 대상이 된 1977년 참의원통상선거의 경우 선거인 기준 인구편차는 4.79이었음.
- 이후 1992년 참의원통산선거에서 선거인기준 인구편차가 6.59배에 달하여, 1996년 9월 11일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상태 판결이 내려짐. 이후로 참의원의 인구편차 상한선은 약 6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라. 기타 관련 입법동향, 주요이슈, 주요판례 등

1) 2012년 중의원선거 선거무효 소송

❍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제 3조에 의하면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최대 2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달성되고 있지 아니함.

65) 재판소 재판례정보. URL: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3234 (접속일자: 2016년 3월 14일)

66) 재판소 재판례정보. URL: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4249 (접속일자: 2016년 3월 14일)

○ 최근들어 선거구 간 인구 격차에 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결이 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사정판결으로 선거무효가 된 예는 없음.

○ 사상 첫 선거무효 판결은 2013년 3월 25일과 26일의 히로시마(廣島) 제 1구, 제 2구와 오카야마(岡山) 제 2구의 선거무효 판결임. 다만 2013년 11월 20일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해 선거무효를 기각하여 위헌상태[67]임만을 인정하였음.

○ 이하의 표는 2013년 3월 잇따른 선거무효소송의 결과임.

판결일	재판소	판결
2013.03.06	도쿄(東京)	위헌
2013.03.07	삿포로(札幌)	위헌
2013.03.14	센다이(仙台)	위헌
	나고야(名古屋)	위헌상태
2013.03.18	후쿠오카(福岡)	위헌상태
	나고야 카나자와(金沢)	위헌
2013.03.22	타카마츠(高松)	위헌
2013.03.25	히로시마	위헌 및 선거무효
2013.03.26	도쿄	위헌
	히로시마 마츠에(松江)	위헌
	히로시마 오카야마 지부	위헌 및 선거무효

2) 참의원 선거구 개정

○ 참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중의원 이상으로 인구격차로 인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심각함.

67) 위헌상태는 위헌에 가까운 합헌임을 의미함. 즉 조건부 합헌과 가까운 의미를 지님. 다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이는 선거구가 시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단위가 아닌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단위로 하며, 각 도도부현 당 최소 1명의 의원을 보장해왔기 때문임. 또한, 참의원은 3년에 한 번씩 정수의 1/2씩 개선(改選)하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커짐.

○ 따라서 허용가능한 참의원 선거구의 인구격차는 중의원 선거에 비해 관대함.

○ 이에 관련하여, 2015년 8월 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1도도부현 1대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폐기 되었음[68].

변경 전	변경 후
톳토리(鳥取)현 2명	⇒ 톳토리 및 시마네현 2명
시마네(島根)현 2명	
토쿠시마(徳島)현 2명	⇒ 토쿠시마 및 고치현 2명
고치(高知)현 2명	

○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13년 참의원 선거의 최대 인구격차였던 4.77배가 2016년 선거에서는 약 2.93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68)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公職選擧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중의원 홈페이지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18920150805060.htm), 접속일자: 2016년 3월 8일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법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인 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제 95조의 2에 명기되어있음.

1)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 대상 정당 기준

❍ 일본의 비례대표제는 봉쇄조항을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비례대표에 후보자를 등록한 모든 정당이 의석 배분의 대상이 됨.

- 법률상으로는 봉쇄조항이 없으나, 비례대표의 정수가 실질적인 봉쇄조항으로 작용하기도 함[69].
- 참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구 48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쇄조항은 약 2%임(100 ÷ 48 ≒ 2.08).
- 중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11개 블록으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각 블록별로 실질적 봉쇄조항은 약 3%(킨키(近畿)블록, 정수 29)부터 약 16%(시코쿠(四國)블록, 정수 6)까지 다양함.

2) 의석배분 방법

❍ 최대잉여법(Largest remainder method)의 일종인 헤어(Hare)식을 채용한 한국과는 달리, 중의원과 참의원 비례대표 모두 최고평균법(Highest averages method)의 일종인 동트(D'Hondt)식으로 의석배분을 결정함.

❍ 이는 각 정당의 득표수를 1, 2, 3, … 과 같은 정수열로 나눈 뒤,

69) 일본에서는 이를 "숨겨진 저지조항(隱れ阻止條項)"이라고도 부름.

나머지를 제외한 몫이 가장 큰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임.

❍ 상세한 예는 다음 절에서 설명함.

나. 당선인 결정방법

1) 중의원

❍ 중의원 비례대표의 투표방식은 한국과 같은 구속 정당 명부식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1순위부터 할당된 의석 수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됨.

❍ 다만, 일본의 선거제도의 경우,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중복입후보"가 허용되며, 소선거구에 낙선되더라도 비례대표의 당선 순위권에 게재 되었을 경우 당선인이 됨.

- 소선거구에서 당선되었을 경우, 비례대표 명부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당선인이 됨.

❍ 또한 같은 당선순위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게재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중복입후보자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형식임.

❍ 중복입후보와 동시에 동일 당선순위에 배정된 후보자끼리는 석패율(惜敗率)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됨.

❍ 석패율이란 선거구내의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로 나눈 수치임.

❍ 상세한 예는 다음 절에서 설명함.

2) 참의원

❍ 참의원 비례대표는 비구속 정당 명부식으로 유권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내의 후보자 이름을 적거나(개인표) 해당 정당명을 기입(정당표) 후 투표함.

❍ 당선인 결정에 앞서 개인표와 정당표를 합산한 득표수로 의석수를 할당함.

❍ 개인표 득표 1위부터 할당된 의석수의 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됨.

다. 의석배분 방법 사례

1) 중의원

❍ 정당 A, B, C, D가 각각 340000, 280000, 160000, 60000표를 획득하였다고 가정함.

❍ 해당 비례대표 블록의 정수는 10명

❍ 이를 1, 2, 3, …과 같은 정수로 나눈뒤 몫을 구함.

	정당A	정당B	정당C	정당D
득표수	340,000	280,000	160,000	60,000
÷ 1	340,000	280,000	160,000	60,000
÷ 2	170,000	140,000	80,000	30,000
÷ 3	113,333	93,333	53,333	20,000
÷ 4	85,000	70,000	40,000	15,000
÷ 5	68,000	56,000	32,000	12,000

❍ 몫이 큰 순서대로 상위 10개의 수치에 의석을 하나씩 할당함.

	정당A	정당B	정당C	정당D
득표수	340,000	280,000	160,000	60,000
÷ 1	①340,000	②280,000	④160,000	60,000
÷ 2	③170,000	⑤140,000	⑨80,000	30,000
÷ 3	⑥113,333	⑦93,333	53,333	20,000
÷ 4	⑧85,000	⑩70,000	40,000	15,000
÷ 5	68,000	56,000	32,000	12,000
합계	4	4	2	0

❍ 이 예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약 마지막 의석에서 동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당선인 결정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따르며, 정당 A의 후보자 명부가 아래와 같이 6명이 등록되어있다 가정함.

순위	후보자
1	후보자 A1
2	후보자 A2a, 후보자 A2b
3	후보자 A3
4	후보자 A4
5	후보자 A5

❍ 정당 A에게 할당된 의석수는 4석이기 때문에 후보자 A1, A3, A4의 당선은 확실함. 다만 비례대표 2순위인 후보자 A2a와 A2b는 중복입후보자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의 결과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됨.

- 만약 후보자 A2a나 A2b 중 한 명이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나머지 한명이 자동으로 당선인이 됨.

- 단, 두 명 모두 소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면 후보자 A5가 당선인이 됨.
- 두 후보자 모두 낙선하였다면 석패율을 계산하여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됨.
- 두 후보자의 선거구 상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함.

	선거구1			선거구2		
후보자	A2a	B1	C1	A2b	B2	C3
득표수	30,000	40,000	20,000	38,000	41,000	21,000

- 석패율의 계산은 최다득표자의 득표수에 대한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의 비율로, 후보자 A2a의 석패율은 75%(30000 ÷ 40000), 후보자 A2b는 92.68% (38000 ÷ 41000)임.
- 따라서 이 경우에는 후보자 A2b가 당선인이 되며, 최종적으로 당선인은 A1, A2b, A3, A4임.

2) 참의원

❍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정당 A와 정당 B가 있다고 가정함. 비례대표의 정수는 5.

❍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는 이하와 같음.

정당 A		정당 B	
순위	후보자	순위	후보자
1	후보자A1	1	후보자B1
2	후보자A2	2	후보자B2
3	후보자A3	3	후보자B3
4	후보자A4	4	후보자B4
5	후보자A5	5	후보자B5

❍ 각 정당이 획득한 표는 이하와 같음.

	정당 A		정당 B	
개인표	후보자A1	20,000	후보자B1	22,000
	후보자A2	30,000	후보자B2	40,000
	후보자A3	25,000	후보자B3	10,000
	후보자A4	11,000	후보자B4	33,000
	후보자A5	31,000	후보자B5	18,000
정당표		40,000		60,000
합계		157,000		183,000

❍ 동트식으로 의석 배분을 하면 정당 A는 2석, 정당 B는 3석을 할당받게 됨.

❍ 각 정당내에서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함. 정당 A의 경우 상위 2명인 후보자 A5와 A2가 당선자가 되며, 정당 B의 경우 후보자 B2, B4, B1이 당선자로 결정됨.

프랑스

프랑스 연구관 : 안종웅

1.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가. 선거구획정 주체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circonscription électorale)의 주체는 법안발의를 할 수 있는 정부[70]와 의회임.

○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거구 재획정 관련 법안을 법률명령으로 발의함.

○ 선거구획정 법안은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 공개심의 거쳐야 함.

1)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직무

○ 프랑스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법조항이 없는 반면,「선거법 567조와 568조」[71]의거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관련 정부제출법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견해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상원의장이 각각 임명한 3인과 최고행정법원과 최고법원 그리고 회계법원의 각각 선출한 3인 등

70) 「헌법38조 1958년 10월 4일」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article 38)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cidTexte=JORFTEXT000000571356&idArticle=LEGIARTI000006527512&dateTexte=&categorieLien=cid (검색일 2016. 3. 12.)

71) 「선거법 567조 568조」 (Code électroal Article 567, 568)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AC93E49C2ABC63E03D4230341F526C55.tpdila09v_1?idSectionTA=LEGISCTA000020097927&cidTexte=LEGITEXT000006070239&dateTexte=20160315 (검색일 2016. 3. 12.)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 됨(「선거법 567조 1항」).

- ❍ 위원의 임기는 6년 단임이며, 3년마다 3인을 재선출함(「선거법 567조 2항」).
- ❍ 직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위원에 대해 5인 위원의 만창일치 의결로 직무를 중단시킬 수 있음(「선거법 567조 2항」).
- ❍ 결원에 대해 잔여임기를 수행할 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단 잔여임기기 1년 미만일 경우 재임할 수 있음(「선거법 567조 2항」).
- ❍ 위원회는 대통령 법률명령으로 발의 된 정부의 선거구획정관련 법안과 국회에서 발의 된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의견을 관보에 공고하는 직무를 갖음(「선거법 567조 7항」).

2)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 ❍ 대통령은 국가조직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함. 이 위원이 위원회 의장으로 추대됨(「선거법 567조 1항」).
- ❍ 국회의장과 상원의장은 각 의회의 선거법위원회 의원들의 3/5 이상의 반대표를 받지 않은 자를 임명할 수 없음(「선거법 567조 1항」).
- ❍ 최고행정법원은 총회에서 선출 된 고위 사법관을 위원으로 임명함(「선거법 567조 1항」).
- ❍ 최고법원은 총회에서 선출 된 고위 사법관을 위원으로 임명함(「선거법 567조 1항」).
- ❍ 회계법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고위회계관을 위원으로 임명함(「선거법 567조 1항」).

3)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 권한 및 직무

- ❍ 독립성 보장. 위원회는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지 않음(「선거법 567조 3항」).
- ❍ 위원회는 복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법관 혹은 행정관 등 모든 국가공무원을 보고책임자로 지명할 수 있음(「선거법 567조 4항」).
- ❍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이에게 견해를 물을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음(「선거법 567조 4항」).
- ❍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국가에 요구할 있음(「선거법 567조 4항」).
- ❍ 심의 요청 법안에 대해 의견을 기간 내 공고 하지 않을 권한을 가짐(「선거법 567조 7항」).
- ❍ 예산 집행에 대해 어떤 기관의 감사도 받지 않음(「선거법 567조 8항」).
- ❍ 헌법이 규정한 어떤 선출직도 겸임할 수 없음(「선거법 567조 3항」).

「헌법 25조와 국회의원선거 위한 위원회에 관한 2009년 1월 13일 n°2009-39 법」

- 「선거법 567조」[72]

제3권 : 헌법 25조 관련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 「선거법 567조」 L567-1 헌법25조의 최근 조항에 규정된 위원회는 1°대통령의 임명으로 자격을 갖춘 인사, 2°국회의장의 임명으로 자격을 갖춘 인사, 3°상원의장의 임명으로 자격을 갖춘 인사, 4°최고행정법원의 총회에서 선출 된 심의관 이상의 최고행정법원의 구성원, 5°최고법원 총회에서 선출 된 부장판사 이상의 직급인 최고법원의 구성원, 6°회계법원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회계심사관 이상의 직급인 회계법원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과 3°에 명시 된 위원들은 해당 의회의 선거법위원회의 의견 표결 후 각 의회 의장이 지명한 인사들이다. 해당위원회의 위원 중 3/5 이상의 반대 투표 시 임명할 수 없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명으로 자

72) 「선거법 567조, 568조」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088496 (검색일 2016. 3. 12.)

격을 갖춘 인사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L567-2 위원회 위원은 단임 6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3년마다 절반의 위원이 재선출된다. 위원회는 위원 중 한명이 의무 사항을 위배했거나 직무의 제약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나머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사망, 사퇴, 위원직 중지 등의 경우, 잔여임기의 위원을 선출한다.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임될 수 있다.

L567-3 위원회 위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어떤 선출직도 겸임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들은 권한 행사에 어떤 기관의 지침도 받지 않는다.

L567-4 위원회는 현역 혹은 퇴직한 사법관 혹은 행정관 혹은 국가 공무원을 보고책임자로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모든 이에게 견해를 묻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국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L567-5 위원회 구성원은 토론 내용과 투표 그리고 내부업무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업무에 참여한 초청인사들과 관계자들도 동일한 제약을 받는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에 저해 되는 개인적인 어떤 입장도 공개적으로 취할 수 없다.

L567-6 위원회는 4명의 위원 출석 시에만 의결 할 수 있다. 참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동률일 경우, 위원장의 투표가 우위권을 갖는다.

L567-7 수상은 위원회에게 헌법25조의 개정 항목에 명시된 목적의 법안과 법률명령안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도 동일 목적으로 의회가 제안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요청 후 2개월 내에 의견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기한 내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견을 공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L567-8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의 주관자이다. 위원회는 예산지출심의를 요구하는 1922년 8월 10일 조직운영관련 법을 따르지 않는다.

LO567-9 L.567-1에 명시된 인사는 헌법 13조 5항 적용을 명시한 2010년 7월 23일 국가조직법 n°2010-837의 관련항목에 합당하게 지명되어야 한다.

LIVRE VIII : COMMISSION PRÉVUE PAR L'ARTICLE 25 DE LA CONSTITUTION

Article L567-1

La commission prévue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25 de la Constitution comprend : 1° Une personnalité qualifiée nommée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2° Une personnalité qualifiée nommé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3° Une personnalité qualifiée nommée par le président du Sénat ; 4° Un membre du Conseil

d'Etat, d'un grade au moins égal à celui de conseiller d'Etat, élu par l'assemblée générale du Conseil d'Etat ; 5° Un membre de la Cour de cassation, d'un grade au moins égal à celui de conseiller, élu par l'assemblée générale de la Cour de cassation ; 6° Un membre de la Cour des comptes, d'un grade au moins égal à celui de conseiller maître, élu par la chambre du conseil de la Cour des comptes. Les personnalités mentionnées aux 2° et 3° sont désignées par le président de chaque assemblée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permanente chargée des lois électorales de l'assemblée concernée. La désignation ne peut intervenir lorsque les votes négatifs représentent au moins trois cinquièmes des suffrages exprimés au sein de ladite commission. La commission est présidée par la personnalité qualifiée nommée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rticle L567-2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ont nommés pour une durée de six ans non renouvelable. Ils sont renouvelés par moitié tous les trois ans. La commission peut suspendre le mandat d'un des membres ou y mettre fin si elle constate, à l'unanimité des autres membres, qu'il se trouve dans une situation d'incompatibilité, qu'il est empêché d'exercer ses fonctions ou qu'il a manqué à ses obligations. En cas de décès, de démission ou de cessation du mandat d'un membre pour l'un des motifs précédents, il est pourvu à son remplacement pour la durée du mandat restant à courir. Si cette durée est inférieure à un an, le mandat est renouvelable.

Article L567-3

Les fonctions de membre de la commission sont incompatibles avec l'exercice de tout mandat électif régi par le présent code. Dans l'exercice de leurs attributions,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ne reçoivent d'instruction d'aucune autorité.

Article L567-4

La commission peut désigner en qualité de rapporteur des fonctionnaires de l'Etat ou des magistrats de l'ordre administratif ou judiciaire, en activité ou retraités. Elle peut entendre ou consulter toute personne ayant une compétence utile à ses travaux. Elle fait appel, pour l'exercice de ses fonctions, aux services compétents de l'Etat.

Article L567-5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s'abstiennent de révéler le contenu des débats, votes et documents de travail internes. Il en est de même de ses collaborateurs et des personnes invitées à prendre part à ses travaux.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ne

prennent, à titre personnel, aucune position publique préjudiciable au bon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Article L567-6

La commission ne peut délibérer que si quatre au moins de ses membres sont présents. Elle délibère à la majorité des membres présents. En cas de partage égal des voix, celle du président est prépondérante.

Article L567-7

La commission est saisie par le Premier ministre des projets de loi ou d'ordonnance ayant l'objet mentionné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25 de la Constitution. Elle est saisi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parlementaire dont elles émanent des propositions de loi ayant le même objet. La commission se prononce, dans un délai de deux mois après sa saisine, par un avis publié au Journal officiel. Faute pour la commission de s'être prononcée dans ce délai, l'avis est réputé émis.

Article L567-8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est ordonnateur de ses crédits. La commission n'est pas soumise à la loi du 10 août 1922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contrôle des dépenses engagées.

Article LO567-9

La personnalité mentionnée au 1° de l'article L. 567-1 est désign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 loi organique n° 2010-837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나. 선거구획정 원칙

1) 관계규정

○ 「2008년 7월 23일 헌법개정안」[73]은 프랑스국회의석수를 577석으로 제한하고 재외국민선거구를 신설토록 함.

73) 「제5공화국 제도 현대화를 위한 2008년 7월 23일 n°2008-724 헌법개정안」
(La loi constitutionnelle no 2008-724 du 23 juillet 2008 de modernisation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publ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19237256&dateTexte=&categorieLien=id
(검색일 2016. 3. 12.)

○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및 의석배분 관련 2009년 7월 29일 n° 2009-935 법률명령」[74]은 선거구의 기본 단위인 데파르트망(道,지역선거구)를 기본 최소 1인 국회의원을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125 000명의 인구단위에 증가에 따라 의석을 추가하는 원칙을 적용함.

2) 주기 및 법정기한

○ 선거구획정 주기 및 법정기한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음.

다. 선거구획정 절차 단계별 서술

○ 헌번 재판소가 선거구 재획정을 권고함(2008년 5월).[75]

○ 관련 법률명령 계획안 각료회의 심의. 알랭 마르렉스(Alain Marleix) 내무부 지방자치담당 국무장관의 선거구 재획정에 관한 법률명령 계획안 마련하여 각료회의(Conseil des Ministres) 심의 요청함.(2008년 9월 24일).

○ 법률명령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헌 소지가 있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수정함(2009년 1월8일).[76]

---

74)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및 의석배분 관련 2009년 7월 29일 n° 2009-935 법률명령」
(Ordonnance n° 2009-935 du 29 juillet 2009 portant répartition des sièges et délimitation des circonscriptions pour l'élection des député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915491&dateTexte=20160314
(검색일 2016. 3. 12.)

75) 「2007년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견」
(Observat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relatives aux élections législatives de juin 200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18898131 (검색일 2016. 3. 12.)

76) 「국회의원선거와 헌법 25조에 명시된 위원회 관련 법에 대한 2009년 1월 8일 n° 2008-573 DC 헌법재판소 판결 」
(Décision n° 2008-573 DC du 8 janvier 2009 portant Loi relative à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25 de la Constitution et à l'élection des députés)

- ❍ 인구분포를 기본으로 하지 않은 채 데파르트망(지역선거구)마다 최소 국회의원 2인 선출하는 것은 '평등선거' 위배로 위헌
- ❍ 헌법재판소는 선거인명부 등록 유권자 수와 인구 변동의 상응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함. 인구변동만이 획정의 기본이 된다고 해석함.
- ❍ 수정된 법률명령안은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trôle du redécoupage électoral)에 체출되어 심의 통과함.(2009년 6월 25일).
- ❍ 법률명령안은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 심사를 통과함 (2009년 7월 23일).
- ❍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및 의석배분 관련 2009년 7월 29일 n° 2009-935 법률명령」[77]은 각료회의에서 의결됨(2009년 7월 29일).
- ❍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및 의석배분 관련 2009년 7월 29일 n° 2009-935 법률명령을 비준하는 2010년 2월 23일 n°2010-64 법안」이 국회와 상원간 두 번의 왕복심의 후 비준됨(2010년 1월 21일).
- ❍ 2010년 2월 1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후 동년 2월 23일 공표되어 2012년 총선에 실행됨.

---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09/2008-573-dc/decision-n-2008-573-dc-du-08-janvier-2009.42045.html (검색일 2016. 3. 12.)

77)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 및 의석배분 관련 2009년 7월 29일 n° 2009-935 법률명령」
(Ordonnance n° 2009-935 du 29 juillet 2009 portant répartition des sièges et délimitation des circonscriptions pour l'élection des député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0915491&dateTexte=20160314
(검색일 2016. 3. 12.)

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 2002년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권고(2003년 5월 15일)[78]

○ 199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1개의 선거구의 경우 데파트망(道) 평균인구에 20%가 부족했고, 25개의 선거구는 도 평균인구의 20%를 선회하는 등 선거구간에 인구편차가 심각한 상태였음.

○ 2007년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구분포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권고(2008년 5월 29일)[79]

마. 기타 관련 입법 동향, 주요이슈, 주요판례 등

○ 논란 속에 시행된 2010년 선거구획정관련 법안[80][81]

○ 야당의 불균형한 선거구 획정 주장.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19개 선거구 신설하고 33개 선거구 폐지 함(사회당 의원당선선거구 18개, 대중연합당선의원 선거구 15개).

○ 재외국민선거구에 대한 비판.2007년 대통령선거시, 54%의 재외국민 유권자가 사르코지후보(우파)지지함.

○ 11개의 재외국민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서 우파 우세를 주장함.

---

78) 「2002년 6월 9-16일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Décision 2003-20 ELEC-obs - 15 mai 2003 - Observat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relatives aux élections législatives des 9 et 16 juin 200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JuriConst.do?idTexte=CONSTEXT000017664785 (검색일 2016. 3. 12.)

79) 「2007년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견」 (Observat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relatives aux élections législatives de juin 200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18898131 (검색일 2016. 3. 12.)

80) "우파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라리베라시옹, 2009년 7월 29일자. http://www.liberation.fr/france/2009/07/29/un-redecoupage-qui-tire-a-droite_573084 (검색일 2016. 3. 12.)

81) "선거구획정 : 논란의 법안이 곧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논란의 법안" (Redécoupage électoral: le texte controversé bientôt soumis à la commission Guéna), 르 파리지앵, 2009년 4월 22일자. http://www.leparisien.fr/flash-actualite-politique/redecoupage-electoral-le-texte-controverse-bientot-soumis-a-la-commission-guena-22-04-2009-488370.php#xtref=https%3A%2F%2Fwww.google.fr%2F (검색일 2016. 3. 12.)

○ "세금 회피를 위해 스위스와 리첸스타인공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구를 배정해야 했나?"

2. 비례대표제상원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가. 상원의원 선거 방식

1) 선거방식[82].

○ 데파르트망(道,지역선거구)와 해외영토 그리고 재외국민을 위한 6년 임기의 348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함.

○ 3년마다 절반인 174명의 의원을 재선출함.

○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보통선거로 선출함.

2) 선거인단.

○ 348석 중 178석 선출을 위한 2014년 상원의원선거 선거인단[83]

선거인단	인원(명)	%
기초단체위원 (코뮌)	83 185	94,93 %
도의회의원	2 386	2,72 %
지방의회의원	1 061	1,21 %
국회의원	301	0,35 %
상원의원	182	0,21 %
재외단체위원	510	0,58 %
총	87 625	100,00 %

82) 내무부 '상원의원선거' 소개.
http://www.interieur.gouv.fr/Elections/Les-elections-en-France/Les-differentes-elections (검색일 2016. 3. 12.)

83) 「2014년 상원선거 선거인단」 프랑스 내부무 첨부 문서 2014년 9월3일.
http://www.interieur.gouv.fr/Archives/Archives-des-actualites/2014/Elections-2014/Dossier-elections-senatoriales-2014/Le-college-electoral (검색일 2016. 3. 12.)

나. 당선인 결정

- 인구변동에 따라 348명의 상원을 선출하게 됨. 이 중180석(약 52%)은 상원의 비례대표제로, 168석은 최고득표당선2회제로 각각 선출함.[84)]
- 최고득표당선 2회제 투표「선거법 294조.」(2013년 8월 2일 n°2013-702법 12조에 의해 개정)[85)]
- 2인 이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지역구에서는 최고득표당선 2회제 투표를 실시함.
- 유효표 절대과반수와 등록유권자의 1/4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당선 될 수 없음.
- 동율일 경우 연장자 후보가 당선됨.
- 비례대표당선 1회제 투표. 「선거법 259조」(Code électoral Article L295, Modifié par LOI n°2013-702 du 2 août 2013 - art. 13).[86)]
- 3인 이상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데파르트망(道,지역선거구)에서는 선거구 외부입후보자와 우선순위투표가 배제 된 최고평균득표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실시함. 정당명부에 기재된 후보자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됨.

84) 「상원의원선거구재획정」http://www.senat.fr/role/tableau_repartition_senateurs.html (검색일 2016. 3. 12.)

85) 「상원의원선거 관련 2013년 8월 2일 n° 2013-702 선거법」
「LOI n° 2013-702 du 2 août 2013 relative à l'élection des sénateur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7799541&dateTexte=20160314 (검색일 2016. 3. 12.)

86) 「상원의원선거 관련 2013년 8월 2일 n° 2013-702 선거법」
「LOI n° 2013-702 du 2 août 2013 relative à l'élection des sénateur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7799541&dateTexte=20160314
(검색일 2016. 3. 12.)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가. 선거구 획정 주체

1)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87]

❍ 선거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시작하자마자 해당 주 혹은 준주에 선거구획정위원회(redistribution committee) 위원을 임명함(연방선거법 60조1). 선거구획정위원회는 (a) 호주선거위원회위원(Electoral Commissioner)과, (b) 해당 주·준주의 호주선거사무소장(Australian Electoral Officer, AEO)[88]과, (c) 토지측량청장(Surveyor-General)[89]과, (d) 감사원장(Auditor-General)으로 구성되어 있음(연방선거법 60조2).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면으로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하부선거구획정위원(sub-committees)을 임명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63조).

❍ 해당 주 혹은 준주에서는 선거구획정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확장된 선거위원회(augmented Electoral Commission)가 발족이 되며 여기에는 선거위원회 의장(the Chairperson of the Electoral Commission), 선거위원회 위원(The member of the Electoral

87) 호주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설명 참고. http://www.aec.gov.au/FAQs/Redistributions.htm (검색일 : 2016. 2.)

88) 호주수도준주(ACT)에서는 선거구선거사무소장(Divisional Returning Officer)이 대신함.

89) 토지측량실장이 없는 주에서는 해당 장관(토지 계측과 계량과 관련한 업무 책임자)이 토지측량실장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임명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60조 8)

Commission), 해당 주·준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the members of the Redistribution Committee)를 포함하여야 함(연방선거법 70조2).

- 확장된 선거위원회에는 선거위원회에서 3인, 주·준주의 호주선거사무소장,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주·준주대표 2인으로 구성됨[90].

2)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 선거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시작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해당 주 혹은 준주에 선거구획정위원회(redistribution committee)를 임명함.

- 해당 주 토지측량실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맡을 수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토지측량실의 부실장 혹은 총독이 지정하여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적용받는 이를 임명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60조3) 해당 주 감사실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맡을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연방선거법 60조4).

❍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과 직무는 위원 한사람의 공석 혹은 변경으로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연방선거법 60조5). 30일 기간 내에, 2인 이상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물리적, 정신적 불능의 이유로 업무에 임할 수 없을 때에 선거위원회는 다른 선거구획정위원회 임명을 위해 해당 선거구획정위원회 임명을 서면으로 취소해야함(연방선거법 60조 6).

90)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에서 발간한 2013년 연방선거와 2014년 서호주 상원의원선거 결과 보고서(Electoral pocketbook) 참고, 호주선거위원회, 2015, p.12. 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3/files/2013-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6. 2.)

- 위와 같은 이유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임명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임명은 없었던 것으로 함(연방선거법 60조 7).

3)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및 직무

❍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때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함.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의 호주선거사무소장(Australian Electoral officer)이 회의를 소집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의 개회정족수는 3인이며 결정정족수는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한 위원의 수의 과반수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어떤 지원요청에도 응해야함(연방선거법 62조).

❍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적으로 공중의 의견을 받고 이를 공개하며 이에 대한 공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시민들의 의견은 최종결정에 고려되어야 함.[91]

- 이전에 토론하였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거나, 너무 사소한 문제가 아닌 이상 확장된 선거위원회는 다시 시민들의 의견과 질의를

91) 선거지식정보네트워크에서 호주 선거구획정 케이스. http://aceproject.org/ace-en/topics/bd/bdb/bdb05/bdb05a. (검색일 2016. 3.)

받아야 하며 보통은 주도에서 이루어지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논쟁이 있는 선거구 지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함.

- 최종결정을 내릴 때 확장된 선거위원회에서는 최종안이 이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안과 전혀 다른 안인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함.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더 이상의 반대의견이 없다면 확장된 선거위원회에서는 최종 선거구획정안을 고시할 수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 절차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절차 안에서 함으로 끝없는 반대로 절차가 교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선거구획정절차에서의 입법부 역할은 없으며 최종결정이 국회에 전달될 때에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나. 선거구획정 원칙

1) 관계규정

❍ 호주의 선거구획정은 주기와 인구편차 허용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선거구안은 국회에서 반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나라 선거구획정 절차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평가가 있음.[92]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안을 정할 때 하원의원 정수, 즉 해당

92) 선거지식정보네트워크에서 호주 선거구획정 케이스 http://aceproject.org/ace-en/topics/bd/bdb/bdb05/bdb05a (검색일 2016. 3.)

주·준주 안의 인구수 기준(quota)를 고려하는데(연방선거법 66조2) 인구편차를 줄이고 투표가치를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임.

- 선거위원회에서는 하원의원의 새로운 의회기 시작하고 12개월 후에 호주통계청(Australian Statistician)에서 발표한 최신통계를 가지고 준주를 제외한 연방지역 인구수를 확정함.
- 인구수 기준은 6개주의 총 인구수를 주의 상원의원 수의 두 배 한 값으로 나누어 결정하고, 하원의원 정수는 각 주·준주의 총인구에서 인구수기준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여[93] 선거구 내 인구수가 해당 지역의 하원의원 정수에 비례하게 하여 동등한 투표가치를 갖도록 선거구를 결정하게 됨.

$$\frac{6\text{개주의 총인구수}}{\text{해당주의 상원의원 수}\times 2} = \text{인구수기준}(population\ quota)$$

$$\frac{\text{해당주,준주의 인구수}}{\text{인구수기준}} = \text{하원의원 정수}$$

93) 2013년 연방선거의 인구수기준은 $\frac{21,883,246}{72\times 2} = 151,966.986$이고남호주의하원의원정수는 $\frac{1,650,383}{151,966.936} = 10.8601$으로 반올림하여 11명이 됨.

주/준주	인구수	인구수기준	인구수/인구수기준	하원의원 수
뉴사우스웨일즈	7,272,230	151,966.986	47.8540	48
빅토리아	5,585,573	151,966.986	36.7552	37
퀸즐랜드	4,548,700	151,966.986	29.9322	30
서호주	2,317,068	151,966.986	15.2472	15
남호주	1,650,383	151,966.986	10.8601	11
타즈매니아	509,292	151,966.986	3.3513	5
수도준주	362,424	151,966.986	2.2849	2
북부준주	231,953	151,966.986	1.5263	2
총				150

- 헌법 24조에서 6개주에 최소한 5명 이상의 하원의원이 선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즈매니아주 의원수는 인구수기준 계산으로 하면 3명이지만 헌법에 따라 하원의원 수를 5명으로 맞춤.
-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에서 발간한 2013년 연방선거와 2014년 서호주 상원의원선거 결과 보고서(Electoral pocketbook) 참고, 호주선거위원회, 2015, p.13. 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3/files/2013-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6. 2.)

$$\frac{\text{해당주에등록된선거인수}}{\text{하원의원정수}} = \text{등록선거인기준}(enrolment\,quota)$$

- 연방선거법 66조3에서 인구편차의 허용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선거구획정시 각 선거구의 선거인등록이 된 선거인의 수는 선거인기준에서 10% 이내에서 있어야 하고, 선거구획정 절차를 마치는 날로부터 3년 6개월 후를 예측한 때에 선거구 인구가 추정선거인 평균에서 3.5% 이상 차이나면 안됨.
- 이에 더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안을 제안할 때에는 각 선거구의 (a) 개별 선거구 내의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커뮤니티 특색, (b) 개별 선거구 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교통수단, (c) 개별 선거구의 유형적 특색과 지형, (d) 현재 선거구의 경계선을 고려해야함(연방선거법 66조3(B).

66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제안

(3) 선거구안을 제안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a) 63A에 의해 정해진 추정기간에 해당 주,준주의 개별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인의 수가 선거구 선거인 등록 평균의 96.5%이상, 103.5%이내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b) (a)에 더하여 개별 선거구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ⅰ)선거구 내의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커뮤니티 특색
(ⅱ)선거구 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교통상황
(ⅲ)선거구의 유형적 특징과 지형
(ⅳ)현재 있는 선거구의 경계선
위 내용과 선거인쿼터는 선거구획정제안안의 기본틀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쿼터의 1/10 이상 혹은 1/10이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약간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66 Redistribution Committee to make proposed redistribution

(3) In making the proposed redistribution, the Redistribution Committee:

(a) shall, as far as practicable, endeavour to ensure that, if the State or Territory were re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ed redistribution, the number of electors enrolled in each Electoral Division in the State or Territory would not, at the projection time determined under section 63A, be less than 96.5% or more than 103.5% of the average divisional enrolment of that State or Territory at that time; and

(b) subject to paragraph (a),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in relation to each proposed Electoral Division, to:

(i) community of interests within the proposed Electoral Division,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regional interests;

(ii) means of communication and travel within the proposed Electoral Division;

(iv) the physical features and area of the proposed Electoral Division; and

(v) the boundaries of existing Divisions in the State or Territory;

and subject thereto the quota of electors for the State or Territory shall be the basis for the proposed redistribution, and the Redistribution Committee may adopt a margin of allowance, to be used whenever necessary, but in no case shall the quota be departed from to a greater extent than one tenth more or one tenth less.

❍ 연방 선거구획정과 주 혹은 준주 선거구획정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각의 선거구 획정은 다른 입법체계와 법정기한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절차를 거침.[94]

2) 주기 및 법정기한

❍ 연방선거법 59조2에서 선거구획정 절차가 시작되는 3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명령으로 관

94) 호주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설명 참고. http://www.aec.gov.au/FAQs/Redistributions.htm (검색일 2016. 2.)

보에 선거구획정을 고시함으로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a) 하원의원 의회기 시작일로부터 1년 후 해당 주와 준주의 인구수를 확정하는데, 이때 인구수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인구수 기준(population quota)도 바뀌어 해당 주·준주의 하원의원 수가 바뀌는 경우, (b) 연방선거법 58조1조에 따라 매달 마지막 날에 선거위원회는 선거등록인 수를 확인하는데, 선거등록인 수가 바뀌어 해당 주·준주에 1/3 이상의 선거구에서 2개월 연속으로 선거등록인수가 선거구 평균의 10%를 벗어나 투표가치가 불균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 확장된 선거위원회에서 선거구 최종확정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연방선거법 59조2)
- 하지만 선거구재획정 절차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의회기 종료에 의한 하원의원이 해산하는 날이 1년 이내일 경우에 연방선거법 59조2의 (b),(c) 하의 선거구획정결정은 할 수 없음(연방법선거법 59조3).

❍ 연방선거법 63A조에서 '추정시간(projection time)'을 명시하고 있음. 인구수 변동으로 하원의원 정수가 바뀌어 선거구획정 주기를 마치기 전에 선거구획정이 일찍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정시간은 선거구획정으로부터 3년 6개월 후를 말함. 이는 선거구획정 주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선거구의 불일치 상황을 대비하여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3.5%이상 차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임.

연방선거법 59조 선거구재획정 시기

(1) 주와 수도준주의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위원회가 명령하여 관보에 고시할 때 시작한다.

(2) 3항과 5항에 관련하여 1항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다.
(a) 48(1)조에 의한 결정에 따라 일반선거에 선출되는 하원의원의 정수가 바뀌는 경우,
(b) 58(1)조에 의하여 선거위원회 결정으로 2개월 이상 선거구의 3분의 1 이상이 불균형 분배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c) 73(1)조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된 날짜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 30일 이내에

(3) (2)(b)와 (c)에 의해 (1)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주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진행하고 있거나,
(b) 의회기 종료에 의한 하원의원 회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59 Times at which redistributions are to commence

(1) A redistribution of a State 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into Divisions shall commence whenever the Electoral Commission so directs by notice published in the Gazette.

(2) Subject to subsections (3) and (5),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be made in relation to a State:

(a) forthwith after the making of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48(1) that results in an alteration of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o be chosen in the State at a general election;

(b) whenever it appears to the Electoral Commission, from statements published under subsection 58(1), that more than one third of the Divisions in the State are, and have, for a period of more than 2 months, been, malapportioned Divisions; and

(c) if a period of 7 years after the day on which the State was last distributed into Electoral Divisions by a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73(1)

expires, within 3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7 years;
and not otherwise.

(3) A direc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be made in relation to a State by virtue of paragraph (2)(b) or (c):

(a) if the State is undergoing redistribution into Divisions; or

(b) within one year before the date of expiry of a House of Representatives by effluxion of time.

다. 선거구획정 절차[95)]

❍ 선거구획정 절차가 시작되면 선거위원회는 등록선거인 기준(enrolment quota)를 계산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Redistribution Committee) 위원을 임명함. 등록선거인기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a) 현재 등록선거인 기준 혹은 선거구의 평균 선거인등록 기준과 (b) 선거구획정 3년 반 이후를 추정한 추정기준 혹은 추정시간에 선거구의 평균 선거인등록 기준이 필요함[96)].

- 현재 등록선거인 기준(current enrolment quota)은 선거구획정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여야 함. 이 값은 선거구획정절차 시작하는 날 해당 주·준주에 등록된 선거인 수를 주·준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의 수로 나눈 것으로, 각 선거구에서 선거인의 수가 이렇게 계산된 현재등록선거인기준의 10%를 벗어

95)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에서 선거구획정절차(Steps in the redistribution process) 부분 참고. http://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steps.htm, (검색일 2016. 2).

96) 2011년 1월 서호주의 경우를 예를 들면, 현재 등록기준은 $\frac{1,107,001}{11} = 100,630$으로 한 개의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위 등록기준의 10%안이어야 하므로 최대 110,699명, 최소 90,572명 사이어야하고, 선거구획정으로부터 3년 반 후인 2015년 1월에 추정한 추정기준은 $\frac{1,152,271}{11} = 104,752$으로 추정한 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는 이의 3.5%인 최대 108,418명, 최소101,086명 사이여야 함.

나지 않아야함.

$$\frac{\text{해당주에등록된선거인수}}{\text{하원의원정수}} = \text{현재등록선거인기준}$$

- 추정한 등록선거인 기준(projected enrolment quota)은 3년 반 이후에 해당 주·준주에 등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인 수를 주·준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의 수로 나눈 것으로, 추정시간(projected time)에 각 선거구에서 선거인의 수는 추정한 등록선거인 기준에서 3.5%를 벗어나지 않아야함.

$$\frac{\text{추정된등록선거인수}}{\text{하원의원정수}} = \text{추정된등록선거인기준}$$

65조 기준(쿼터)

(1) 주와 수도준주의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2)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당 지역 선거인의 기준(쿼터)를 결정해야한다.

(2)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절차가 시작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기준(쿼터)를 정하는데 기준(쿼터)는 선거구획정절차 시작하는 날에 가장 최근의 자료를 통해 결정된 등록된 선거인의 수에서 일반선거에서 선출할 하원의원 정수를 나눈 수가 됨.
(a) 나눈 값의 나머지가 0.5이하라면 버림을 하고;
(b) 나눈 값의 나머지가 0.5이상이라면 올림을 함.

65 Quota

(1) For the purposes of each redistribution of a State 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he Electoral Commissioner shall, by instrument in writing,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 the quota of electors for the State or Territory.

(2)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redistribution commences, the quota of electors for a State 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hall be determined by the Electoral Commissioner by dividing the number, as nearly as can be ascertained by him

or her, of electors enrolled in the State or Territory at the end of the day on which the redistribution commenced by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o be chosen in the State or Territory at a general election and: (a) if the number so obtained includes a fraction that is less than one half－reducing that number to the nearest whole number; or (b) if the number so obtained includes a fraction that is one half or more－increasing that number to the nearest whole number.

- 선거위원회는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기관에게서 30일 동안 제안을 받음. 해당 제안안은 다른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그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함.
- 그 이후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제안안을 내는데 이때는 연방선거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고려요소와 시민들의 서면 제안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해야함. 이 제안안에는 선거구 경계선과 선거구명이 명시된 지도와 함께 그 결정이유를 나타내야하며 이것은 시민들에게 공개됨. 그로부터 28일 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안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받아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14일 이내에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함.
-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확장된 선거위원회(augmented Electoral Commission)에서는 반대의견서 수리 종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구제안내용을 공개해야하는데, 만약 확장된 선거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선거구획정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했던 것과 현저하게 다를 때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과 조직은 7일 이내에 추가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확장된 선거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거구 결정안과 결정이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이를 특별장관(Special Minister of State)과 국회 상하원에 전달함. 이때 국회에서는 확장된 선거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 선거구획정 고시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97]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도 법으로 정해진 네 번의 의견서 수리 기간에는 선거구의 경계선 위치나 선거구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아닌 때에 제기되는 의견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확장된 선거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정해진 기한
선거위원회가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선거구 획정 절차가 시작됨. 득표할당량(quota)도 결정함.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명함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선거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제안서**를 서면으로 받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하되 수요일 관보에는 해당 공지를 내야 함
시민 제안서 수리 종료	공지 이후 5번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시민들에게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받음	공지 이후 5번 째 월요일부터
시민 제안에 대한 서면 의견서 수리 종료	공지 이후 7번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안서, 의견서를 고려하여 선거구에 대해 논의함	제한없음
선거구의 경계선과 선거구명이 적힌 지도를 개제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 이유도 함께 공개함. **선거구획정위원회 결**	금요일 관보에 개제

97) 호주선거위원회(AEC)홈페이지에서 선거구획정 절차(Redistribution timetable) 내용 참고. http://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Timetable.htm, 검색시기: 2016년 2월.

정에 대한 시민의 반대의견 받음.	
시민 반대의견서 수리 종료	선거구 관보 게재 후 4번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시민의 반대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받음	선거구 관보 게재 후 5번째 월요일 부터
반대의견서 수리 종료	선거구 관보 게재 후 6번째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확장된 선거위원회에서 반대의견서 논의	반대의견서 수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98]

- 미국에서는 선거구 관련된 소송이 활발한 반면 호주에서는 선거구에 관한 불복청구소송이 거의 없었으며 그중에서도 상소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음.[99]
- 다른 지역에 다른 선거인 등록 기준(quota)을 적용함으로서 인구편차에 의한 불균등한 분배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남호주에서 탐 플래이포드(Tom Playford) 전 주지사의 '플레이맨더(playmander)'와 퀸즐랜드에 한런 노동당 정부(Hanlon Labor)의 '죠커맨더(bjelkemander)'를 들 수 있음.
  - 플레이맨더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광범위한 시골지역을 아우르는 선거구를 만들었고, 죠커맨더는 한 지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다른 쿼터를 적용시킨 것임. 두 사례 모두 선거구의 불공정한 분배의 형태로 보임.

98) 호주방송 선거섹션(ABC Elections)에서 개리맨더링 소개(A beginners guid to Gerrymadering) 정리. http://blogs.abc.net.au/antonygreen/2011/11/a-beginners-guide-to-gerrymandering.html, 2011, 검색시기: 2016년 3월.

99) 호주 선거구획정의 공평성에 관한 논문, Fairness and Equality in Electoral Redistribution in Australia, Jenni Newton-Farrelly, 2013, 47p. http://law.unimelb.edu.au/__data/assets/pdf_file/0007/1556008/WP_9_Farrelly4.pdfCa (검색일 2016. 3.)

- 서호주의 입법부는 여전히 불균등한 상태를 보이는데 의원 정수의 반이 주 인구의 3/4이 모여있는 대도시 퍼스에 분배되어 있고 퍼스 외의 지역에 사는 나머지 25%만을 대표하는 의원이 남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투표 한표가 갖는 가치가 같지 않음.
- 2008년 퀸즐랜드(Queensland)의 가장 큰 선거구(Mt Isa)에서는 선거인이 쿼터보다 35% 적었고, 2011년 서호주에서 선거인은 쿼터보다 57% 적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10%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임. 또한 타즈매니아주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인구편차가 크기 때문에 헌법에서 타즈매니아주에 하원의원 의석 5석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라고 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기준 중의 '지역 커뮤니티 특색('community of interest)'을 악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선거구 획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집권당이 중요 선거구를 차지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음은 부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여러 해 동안 사법부에서 선거구 불균형 분배(malapportionment)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것은 선거구재획정과정의 재량적인 부분이며 또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위해 어느 정도의 게리맨더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남호주에서처럼 선거구재획정 기준으로 '공정성(fairness)'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100].

100) 남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남호주선거구위원회(South Australian Electoral districts boundaries commission) 설명부분 참고.
http://www.ecsa.sa.gov.au/electoral-boundaries/electoral-districts-boundaries-commission (검색일 2016. 3.)

마. 기타 관련 입법동향

❍ 과거에는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의 5년치 총조사구역(Census Collection Districts)이라는 기본구역기준을 사용하여 선거구획정을 하였는데 각 구역의 인구, 선거인 수, 그리고 추정된 인구수와 같은 지역과 인구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101)]

- 이러한 총조사구역의 경계선과 인구정보데이터는 이제 컴퓨터에 자료화 되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질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내에서 해당 구역기준을 바꾸거나 합치는 수동적 선거구획정(passive redistribut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GIS 활용은 선거구 획정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였다고 평가받음.

❍ 남호주의 선거구획정기준으로 '공정성(fairness)[102)]'을 들고 있으며 다른 획정기준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103)] 서호주와 빅토리아주에서도 위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공정한 선거시스템이 작동한다면 특정 후보자 혹은 그룹이 그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였을 때 그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임.

- 불공정한 선거 내용을 살펴보면 1989년에 호주노동당이 48% 득표에 24석을 얻어 정부를 구성하였고, 자유당이 52%를 득표하였음에도 23석 획득하였는데 이는 83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이 공정하지 않

101) 선거지식정보네트워크에서 호주 선거구획정 케이스
http://aceproject.org/ace-en/topics/bd/bdb/bdb05/bdb05a (검색일 2016. 3.)

102) 남호주 조직법(Constitution Act) 83조, 선거공정성과 다른 기준(Electoral Fairness and other criteria)

103) 호주 선거구획정의 공평성에 관한 논문,
Fairness and Equality in Electoral Redistribution in Australia, Jenni Newton-Farrelly, 2013, 42p

았던 것임. 따라서 지난 선거결과에 기초하여 선거구의 '전환(transferred)'이나 '해제(unlocked)'의 방법으로 선거구재획정을 하는데, 이때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50.01% 득표를 하는 경우 과반수 넘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여 '공정한(fair)' 선거결과를 얻게함.[104)]

- 이것은 한 정당이 몇몇 지역의 안정적인 의석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생기는 오류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조항을 새로 적용하여 매 선거 후에 선거구획정을 하여 공정한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자는 안건과 선거구획정기준 중에 '현재 선거구경계(existing district)'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하자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76.7%의 찬성을 얻었음.[105)]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

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법

❍ 비례대표 선거방식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명부식(list system), 혼합식(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단기이양식(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이 있음. 호주 상원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선거방식은 단기이양식 방법으로[106)] 모든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표시한 선호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들에게 이양되며, 후보자는 득표할당량(quota)이상을 획득한 경우 당선 결정함.

104) 남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07년 선거결과보고서 중 'Electoral Fairness' 설명 내용 참고. http://www.ecsa.sa.gov.au/component/edocman/?view=document&id=359:edbc-2007-exhibit-31&highlight=YToxOntpOjA7czo4OiJmYWlybmVzcyI7fQ==. (검색일 2016. 3.)

105) The Fairness Clause in South Australia, Jenni Newton-Farrelly, electoral Regulation Research Network, 2012, 26p.

106) 호주뉴질랜드선거자문위원회 홈페이지 호주의 비례대표 선거방식에 대한 설명 부분. http://www.eca.gov.au/systems/files/2-proportional-representation-voting-systems.pdf. 2013년. 8p. (검색일 2016. 3.)

나. 당선인결정[107]

❍ 호주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절대다수선호투표제[108]를 통하여 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고 150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총 15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없음. 상원의원 선거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결정하며 상원의원 선거 개표집계 시 당선 득표할당량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는 즉시 당선인이 됨.

- 당선 득표할당량(senate quota)는 유효투표총수를 상원의원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누고 그 값에 1을 더한 수이며(소수점이하는 버림), 투표용지에서 숫자 '1'을 받은 수를 말하는 유효투표수(formal ballot papers)가 계산한 득표할당량을 넘는 후보자는 즉시 당선인이 됨.

$$\frac{\text{유효투표총수}}{\text{상원의원 의석수}+1}+1=\text{상원의원 당선 득표할당량}$$

❍ 선거인은 투표용지[109]에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우선순위 표시를 하며 1순위 유효투표수가 당선 득표할당량 이상이 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초과분을 2순위표 받은 후보자에게 이양하여 당선자가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반복함.

---

107)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에서 발간한 2013년 연방선거와 2014년 서호주 상원의원선거 결과 보고서(Electoral pocketbook) 참고, 호주선거위원회, 2015, p.57. 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3/files/2013-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6. 2.)

108)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1구 1인 소선거구제로 제 1순위표를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투표자의 1순위표를 해체하여 그 표에 기재된 차순위후보자에게 이양함.

109) 상원의원 투표용지는 큰 선을 중심으로 그 위('Above-the-line')와 아래('Below-the-line')로 나뉘어져있는데 선거인은 위 혹은 아래에 기표를 하거나 둘다 하지 않을 수 있음. 둘다 기표한 경우에는 아래에 한 기표를 우선으로 고려함.
- 투표용지 윗부분('Above-the-line')에 기표하는 선거인은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 숫자 '1'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두어야 함. 이 경우 호주선거위원회(AEC)는 위의 투표용지를 그룹표선거(group ticket voting)으로 그룹(group) 혹은 정당(party)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랫 부분('Below-the-line')에 기표한다면 선거인은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 숫자 '1'을 기재하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자에 숫자 '2'를 기재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선호하는 순서대로 숫자를 채워야함.

- 당선된 후보자의 1순위 투표수에서 득표할당량을 제외한 표는 다음 순위를 받은 후보자에게 이양되는데 이때 득표할당량에 포함되는 투표용지와 초과분인 투표용지를 정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의 모든 유효투표는 일정 비율로 나누어져 이양됨.

$$\frac{\text{당선자의 잉여표수}}{\text{후보자의 득표수}} = \text{이양비율}(transfer value)$$

❍ 후보자 A가 100만표를 획득했으며 당선 득표할당량이 60만표였다면 잉여표는 40만표가 됨. 이때 후보자 A의 이양비율은 $\frac{400,000}{1,000,000} = 0.4$가 됨. 후보자 A의 유효투표용지 100만표는 2순위 받은 후보자의 투표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시 결정됨.

- 후보자 A의 표중에 후보자 B를 2순위로 표시한 수가 90만표라고 한다면 후보자 B는 이양표로 36만표(900,000×0.4)를 받고 후보자 B의 1순위 투표수와 합함. 그 값이 득표할당량을 넘으면 후보자 B에게 당선결정이 됨. 후보자 B에게 득표할당량을 제하고 남은 잉여표가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후보자에게 이양하게 됨.

❍ 획득한 유효투표총수가 가장 적은 후보자는 해당 이양과정에서 차례대로 제외됨. 그들의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기표된 선호에 따라 다른 후보자에게 분배되며 이 표를 합쳐서 득표할당량이 넘은 후보자는 바로 당선이 결정됨. 상원의원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함.